

제2부 쟁점별 분석

목차별 판결색인

제1장 언론 소송

1.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02

2. 언론소송이란

3. 우리나라 언론소송의 모습
 가. 법적 구제수단
 나. 담당재판부
 다. 재판의 진행
 라. 관 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제2장 명예훼손

1. 명예와 명예훼손의 정의

2. 당사자
 가. 원 고
 * 죽은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유족들이 직접 자신들의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69303 판결) 106
 * 서울특별시에 속한 공무원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서울특별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6918 판결) 106
 나. 피 고
 (1) 외주제작의 경우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107
 (2) 포털사이트의 책임
 *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 포털사이트의 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 107
 *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108

* 포털사이트의 포털앨범에 올린 이미지 파일로 인하여 명예 훼손이 되는 경우 포털사이트가 책임을 지는지(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6나48160 판결) 109

(3) 정보제공자 또는 취재원

* 취재원이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지(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40098 판결) 110

*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어 명예훼손이 된 사건(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778 판결) 110

*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그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6나103531 판결) 111

* 수사기관이 작성·배부한 보도 자료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된 경우 보도 자료를 작성·배부한 경찰관들과 경찰관들의 관리감독주체인 대한민국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112

* 변호사의 전직 사무장이 언론에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 내용이 기사화 된 경우 전직 사무장의 명예훼손 책임(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113

3. 피해자 특정

가. 특정의 정도와 기준

(1) 일반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 113

(2) 피해자 특정이 인정된 사례

* “김 아무개 증사” 사건(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 114

*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 사건(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114

* “김 씨” 사건(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114

* “00시 공무원” 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9. 19. 선고 2006가단4557 판결) 114

* “A 변호사” 사건(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114

* 인터넷쇼핑몰 사이트가 특정되었는가(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가합14166 판결) 115

* “김 모 교수”와 “박 모 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5157 판결) 115

* 참고: 미국 보스턴 지역의 고등학생 사진 보도 사건 (Stanton v. Metro Corp,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2006. 2. 23) 116

(3) 피해자 특정이 부정된 사례

* “사건 당사자의 가족” 사건(창원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가합170 판결) 116

* “우리는 노예였어요” 보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116

*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된 “김 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514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가단2254 판결) 117

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1) 일반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117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부정한 사례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그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가단275759 판결)	118
*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이라는 집단 표시를 함으로써 그 집단의 구성원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74575 판결)	118
*참고: “미시시피 배심원”이라는 집단 표시로 배심원단 개개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Gales v. CBS Broadcasting Inc, US Court of Appeals of the Fifth Circuit, 2005. 3. 3)	119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	
* “검찰”의 불법감청 의혹 보도 사건(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119
*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 “시장 측근”의 수뢰 의혹 보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6918 판결)	119
* “경찰이 카드깡” 보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14032 판결)	120
* “독도경비대”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195 판결)	120

4. 구체적 사실의 적시

가. 일반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120
*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121

나. 제3자의 저술이나 강연, 발언의 내용을 빌려 기사화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다102241 판결)	121
* 진중권씨 강연 왜곡 보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다102241 판결)	121
* 영부인 비하 발언 보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78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나29589 판결)	122

다. 논평 또는 의견표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123
--	-----

(1) 의견 또는 논평이라도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이로써 별도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6가합98182 판결)	123
* 검찰의 불법감청 의혹 보도 사건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123

(2)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논평으로 본 경우

* “지역 평가에선 ‘조선인 권00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가 지난해 구정장 선거 공천파동에 이어 대선을 거지면서 인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나21491 판결)	124
* “이번 소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를 지녔다”는 부분은 소송 및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124
* “유령조입”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124
* “알박기식 가져분” 보도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125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행하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125
*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이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6가합98182 판결) 125

* 제3자의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126

(3) 어떤 사실들을 전체로 한 의견 표명 또는 논평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방법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126

(4) 의견 또는 논평이 그 한계를 일탈하여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분열적 정신상태” 표현이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서울고등법원 2005. 1. 11. 선고 2004나440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8. 선고 2002가단249152 판결) 126

* “물엿기가 도를 넘어섰다”, “노골적으로 제 뺨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등의 표현이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721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나29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가합1120 판결) 127

* “사이비 왕색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 발언이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2910 판결) 128

* 참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보도 사건(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05. 11. 3) 128

라. 만평 · 시사 만화

* 만평 또는 시사만화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128

* MBC의 이명박 선전 만평 사건(서울중앙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합4733 판결) 129

마. 드라마 · 영화

(1) 드라마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 (병합) 판결) 130

* <제5공화국> “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 방송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 판결) 130

* KBS-TV 드라마 <서울1945>가 장택상, 이승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 병합) 131

(2) 영화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132

* 영화 <실미도>의 모델이 된 일명 ‘684 부대’ 훈련병의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132

*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133

바. 기타

(1) 종교적 의견표명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1409 판결) 134

(2) 유머, 농담, 패러디

* 참고: Tonight Show의 진행자 게이 레노의 농담 사건 (Marilyn Drake v. Jay Leno, et al, San Francisco Superior Court, 2006. 6. 15) 134

* 참고: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약자어 “BUFU”의 사용한 것이 “FUBU”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GTFM LLC v. Universal Studios Inc,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06. 5. 16) 134

5.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가. 일반론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134
나. 판단기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34
* “특허청, 발급실수 기업파산” 보도 사건(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134
* 원하지 않는 이혼사실이 밝혀진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135
다. 피의사실 보도와 명예훼손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35
라. 공연성과 명예훼손	
* 수사보고서와 같은 내부적인 업무서류의 작성행위가 공연하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136

6.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가. 일반론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36
---	-----

(1)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완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137
---	-----

* 미국법상 공인관련 보도의 ‘현실적 악의’ 이론

(2) 공적 사안에서의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심사 기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3다37524, 37531 판결 참조)	137
---	-----

(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보도로 언론의 자유의 제한이 완화된다고 본 사례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38
--	-----

* 편집사들이 원고로부터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여부에 관한 보도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138
---	-----

*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여부에 관한 보도(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138
---	-----

* 연대자동차의 노사관계(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139
--	-----

* “돌발영상”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106066 판결)	139
---	-----

(나) 언론사에 대한 비판·감시 기사인 경우 위법성판단 심사 기준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6가합11556,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98394 판결)	140
--	-----

* 언론사가 힘을 행사하여 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140
--	-----

*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들의 권언유착과 관련된 보도를 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98394 판결)	141
---	-----

(3) 공적 인물

*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141
--	-----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는 공인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141
* 국회의원은 공인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106066 판결)	142
*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법무부 차관은 공인이다(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142
* 참고: 스포츠 스타를 치료했던 유명 족병전문의 (Carver v. Bonds, California Superior Court San Francisco County, 2004. 7. 30)	142
나. 공익성	
(대법원 2007. 9. 16. 선고 2005다6276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142
*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를 비난한 보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59554 판결)	142
(1) 공익성을 인정한 경우	
*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의 배우자가 최근 5년간 1,455,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나21491 판결)	143
* 원고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진00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143
* 방송사의 대표이사가 방송사를 정지적 용보를 위해 말용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을 거론한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627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5나11833 판결)	143
*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부유층 인사들을 고발하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 된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143
* 공동경비구역에 우리 군이 배치된 이래 최초로 발생한 장교 사망 사건에 관한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	144
* 교사들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수업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관한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144
*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성추행을 저질러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서도 자신의 주직지분을 이용해 위 신문사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가합1826 판결)	144
* 출판업과 관련되는 업종의 증소기업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가 국가산업단지를 분양하고 관리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생긴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07. 10. 18. 2006가합17426 판결)	144
*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부당해고 하여 그 직원이 변호사를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145
* 국회의원 욕설 보도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5가합98321 판결)	145
*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라도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면 공익성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06. 1. 24. 선고 2005나20936 판결)	145
(2)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가) 범죄사건 보도와 공공성-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145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 자료에 나온 적발업체 중 일부 적발업체를 실명으로 공개한 사건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146

* 공인이므로 신원이 공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3가합70749 판결)	146
(나) 피의사실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에 공공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146
(다) 사인간의 개인 분쟁에 관한 것(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359 판결)	146
다. 진실성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나2149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147
* 공공유행사건 보도(광주지방법원 2007. 12. 24. 선고 2007가합4624 판결)	147
*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의 보도에 진실성이 인정 된다(대전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6가단79121 판결)	147
*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간통혐의 형사사건의 보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5157 판결)	148
라. 상당성	
(1) 상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48
(가)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 언론사가 북한 당국이나 민경련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민경련과 공식적 접촉을 하여온 공기업이 민경련으로부터 받은 팩스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게시물이 상당성이 있는 취재원이 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40098 판결)	149
* 'A가 000를 비롯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였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는 보도에 상당성을 인정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가합1826 판결)	149
* 언론사가 수사기관이 배부한 보도 자료를 신뢰하여 이 보도 자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149
(나)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로 표현한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149
* 보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인 고소장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므로 언론사나 기자들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였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6. 1. 24. 선고 2005나20936 판결)	150
* 강연의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취재 기자가 강연 내용을 메모한 정도의 조사절차는 불충분하고 발언의 신뢰성,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강연자에게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150
* 겨울브로커가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보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단98871 판결)	150
* 국무총리 양주파티 보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82 판결)	151
*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가 게시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05. 7. 14. 선고 2004가단55233 판결)	152
*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2가합52966 판결)	152
* 특허청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153
* 검찰간부의 제보를 받고 원고의 수위사실을 보도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153

*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유일과 연봉에 관한 보도(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154
(2) 피의사실 보도와 상당성 판단	
(가) 피의사실 보도시 언론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대법원 2007. 6. 1. 2004다61372,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6가단1910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0. 18. 선고 2007가단1861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155
(나)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	
* 수사책임자의 공식적인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상당성이 인정된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0. 18. 선고 2007가단18616 판결)	155
*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기자가 제보를 받은 뒤 검찰 등 관계기관과 원고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상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156
* 경찰관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발표 및 배포한 보도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된 기사를 보도한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3가합70749 판결)	156
(다) 상당성이 부정된 경우	
* 경찰내부문서나 비공식적인 확인 작업을 한 후 피의사실을 보도한 경우 기사에 대한 상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9. 14. 선고 2004나261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2가합9215 판결)	157
* 연예인의 성폭행 혐의 보도 사건(대법원 2007. 6. 1. 2004다61372 판결)	157
* 국회의원이 세무조사 무마 등 정략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다는 보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가합42100 판결)	157
* 원고가 복한의 지령을 받거나 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관인 김O을 살해하였다' 라는 단정적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어 상당성이 부정된 사례(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158
* 취재원인 OO대학 관계자와 경찰관계자의 말만 믿고 3,000만원 수뢰 보도를 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6가단19101 판결)	158
*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나787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나7861 판결)	159
(3) 신속성 요구와 상당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합6329 판결)	160
* 월간잡지의 경우 신속성의 요정이 크지 않으므로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합6329 판결)	160
(4) 드라마·영화의 상당성 판단	
(가) 드라마(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 판결)	161
(나) 영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161

제3장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162
* 사역에서 발언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162
* 원하지 않는 이혼사실이 밝혀진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162

2. 사생활과 현장 취재의 문제

* 00시 소개 사찰이 사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9. 19. 선고 2006가단4557 판결)	163
*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원고가 이용하는 승용차,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활동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163
* 자살사건 보도에서 자살한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의 대문과 번지수를 노출시킨 사례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나5344 판결)	164

3. 위법성조각사유

가. 피해자의 동의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64
--	-----

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서울고등법원 2001. 5. 31. 선고 2000나1108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164
* 유명 연예인의 결혼 보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164
*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165
*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안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166
*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 보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106066 판결)	167

제4장 초상권 침해

1. 초상권 일반론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합13887 판결)	169
*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 변조된 경우 초상이 공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가합9017 판결)	169
*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나8560 판결)	169
*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는 인정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5가단286190 판결)	170

2. 초상영리권(Right of Publicity)

* 코미디언 캐릭터 모바일서비스 콘텐츠 사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71
* 약정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불법사용에 해당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단213731 판결)	171
* 참고: 인터넷 서점 웹사이트에 소장 사진이 있는 책표지를 전시에 놓은 것은 퍼블리시타권 침해가 아니다 (Almeida v. Amazon.com In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 2006. 7. 18)	172
* 참고: 유명 운동 선수의 이름을 만화 캐릭터로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타권 침해가 된다 (Doe v. McFarlane, Missouri Court of Appeals Eastern District, 2006. 6. 20)	172

3. 피해자의 동의

*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단16980 판결)	173
*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초상 사용에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173
*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된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여 방송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합108300 판결)	173
*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174
* <여자를 말한다> 프로그램 보험회사 판매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174
* 원고들의 송년회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영한 것은 송년회를 주최한 00웨딩의 협조가 있었다고 아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175
* 미성년자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176
* 방송사는 의무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을 가지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초상 등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176

4. 공익성

가.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합1388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나. 공익성이 초상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경우

* 공적 인물의 초상 사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177
* K가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보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합13887 판결)	177

다. 공익성보다 초상권이 우선 고려된 경우

* 출산 장려를 위한 보도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178
---	-----

제5장 기타 인격권

1. 음성권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49001 판결)	179
---	-----

2. 저작권

- * 기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179
- * <여자를 말한다> 프로그램 보험회사 판매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180

제6장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1. 손해배상청구

가. 재산상 손해

- *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게시되는 표현물에 의해 명예훼손이 된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182
- * 원고가 수입하는 윤활유에 관한 부정적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된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4601 판결) 183
- *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 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4784 판결 (2007. 11. 14. 소 취하)} 183

나. 정신적 손해

- * 국무총리 양주파티 보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82 판결) 184
- * 로비 의혹에 대한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액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93415 판결) 184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184
- *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경우 (1)
(부산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4601 판결) 185
- *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경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185
- *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경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4가합12160) 185

3. 정정보도청구

가. 정정보도청구권자

(1)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

- (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나100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가합1027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186

(2) 개별적 연관성

- * 행정부처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그 장관 소속

행정부처가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186

*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이 속한 단체가 그 개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62 판결) 186

나. 정정보도문 게재의무자

(서울고등법원 2006. 1. 24. 선고 2005나20936 판결) 187

* 방송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는 정정보도의 게재의무자가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4가합12371 판결) 187

다. 대상

(1) 사실적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187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양 핏기인사를 하고 있다” 보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188

(2) 당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188

라. 정정보도문의 게재 거부사유

(1)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언론이 원보도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보도를 해주었으나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189

4. 반론보도청구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취지-동등한 방어주장의 기회와 진실발견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89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90

다. 반론보도청구권자

(1)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가합754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28135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6가합5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카기9504 결정) 190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190

*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191

(2) 개별적 연관성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92

라.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의 범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92

*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카합2433 판결) 192

*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오 선박 보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193

(2)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구별하는 척도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194

*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가 문제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28135 판결(따기완송 우 사건),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195

(3)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하는지, 반론보도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해야하는지의 문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96

* 반론보도는 그 대상이 되는 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101856 판결) 196

(4) 반론권자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가합17426 판결) 196

마. 반론보도문 게재 거부사유

(1)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100290 판결) 197

(가) 반론보도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충분히 원문기사에 실려 이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원보도에 피해자의 인터뷰기사가 실렸으나 피해자가 신청으로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은 여전히 반론보도청구의 이익을 갖는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5. 1. 선고 2002나40113 판결) 197

* 원래 방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일부 보도하였으나, 그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반론보도청구의 이익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197

* 신청인이 반론으로 주장하는 A가 신청인에게 개중강요를 안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원보도에서 포함된 “법원에서 A의 개중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부분에 의하여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100290 판결) 198

(나) 반론보도의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12566 판결) 198

* 고발을 고소로 잘못 표현한 점은 단순한 오기로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100290 판결) 198

(다)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12566 판결) 198

* 신청인이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는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12566 판결) 199

(2)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200

바.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재판

- * 반론보도인용 재판의 취소와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28135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201

5. 금지청구

- * 조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가 인정되면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우라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201
- * 영화상영 등의 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함을 감안했을때, 이 사건 영화로 인한 원고 및 고인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가 그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만큼 중대, 명백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202

6. 형사 고소

가. 명예훼손 관련 범죄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 일반론

- * 학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사건
(순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6. 선고 2005고정4 판결) 203
- * 피해자가 선교회에서 받은 목사 안수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수원지방법원 2006. 3. 20. 선고 2005노4596 판결) 203

(나) 비방의 목적

- * 비방의 목적 인정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노590 판결) 204
- *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04
- *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204
- * 신부가 성당 내 유치원에 다니는 피해아동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에서 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노590 판결) 204

(2) 명예훼손죄

(가) 일반론

- *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부처별 고려 대상자 명단'이라는 인사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였다는 보도가 대통령민정수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205
- * 피고인이 자술서를 배포한 상대방이 모두 기자이기는 하나, 자술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실제로 기사화되어 외부로 전파된 이상 공연성이 있다(광주지방법원 2007. 3. 8. 선고 2006노1816 판결) 206
- *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하여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4고단31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고단3244 판결) 206

(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799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206
- *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207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554 판결)	207
* 취재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799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9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4고단3130 판결)	207
* 교육·시민단체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에 대하여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없어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208
(3) 모욕죄	
*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85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8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참조)	2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일반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209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고경296 판결)	210
(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는 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4. 10.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11
*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조의원선거의 공천에 탈락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노26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고합141 판결)	212
나. 음성권 침해 관련 범죄-통신비밀보호법	
*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212
다. 기타 범죄	
(1) 공갈죄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출마를 앞 둔 피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기사를 계재할 것을 통고하여 신문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갈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1고단13432, 2002고단5755(병합) 판결)	213
* 제약회사의 대외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비판적 칼럼을 게재한 신문을 배포할 것임을 통고하여 제약회사의 홍보이사가 의포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광고료 증액 명목으로 300만원을 갈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7노106 판결)	213
* 공갈의 상대방과 공갈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970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참조)	214
(2) 업무방해죄	

*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책자를 길거리에서 배포하여 신문의 구독증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784 판결) 214

7.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중재

*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결과 반론보도로 합의된 사건을 후에 다시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4가합12371 판결) 214

* 방송사가 조정결과에 의한 합의문 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단7245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4583 판결) 215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7카기1136 결정) 216

법원별 판결 색인

2007년도 법원별 판결

대법원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120, 121, 137, 138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20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7217 판결 12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207, 20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137, 141, 146, 155, 15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나21491 판결 124, 143, 14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778 판결 11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20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114, 155, 15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554 판결 20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141, 145, 14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20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62761 판결 14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188

대법원 2007. 9. 16. 선고 2005다62761 판결 14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970 판결 214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7998 판결 207, 20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185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100290 판결	197, 198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6나48160 판결	110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6918 판결	107, 119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28135 판결	190, 195, 201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노2605 판결	212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210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12566 판결	198, 199, 200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107, 169, 176, 178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40098 판결	110, 149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101856 판결	196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69303 판결	106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106066 판결	140, 142, 168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98394 판결	140, 141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6나103531 판결	112
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나10025 판결	18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166, 1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가합75462 판결	1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7카기1136 결정	2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 (병합) 판결	130, 1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109, 1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112, 136, 149, 1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5가합98321 판결	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82 판결	151, 1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단213731 판결	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2910 판결	1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 판결	130, 131, 1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합6329 판결	1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가합102784 판결	1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합108300 판결	1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93415 판결	1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74575 판결	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합4733 판결	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55 판결	186, 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62 판결	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가합1826 판결	144, 1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123, 125, 188, 1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6가합98182 판결	123, 1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121, 123, 124, 1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가합42100 판결	1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5157 판결	116, 148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135, 163, 1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186, 193, 1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노590 판결	204, 2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359 판결	1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7노106 판결	2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4가합12371 판결	187, 2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6가합11556 판결	1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4784 판결(2007. 11. 14. 소 취하)	18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합13887 판결	169, 1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가합9017 판결	169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나8560 판결	1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857 판결	20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6가단19101 판결	155, 159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0. 18. 선고 2007가단18616 판결	155, 156
---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가합17426 판결	145, 196
--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6가단79121 판결	148
---------------------------------------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6. 선고 2005고정4 판결 203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고정296 판결 210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07. 3. 8. 선고 2006노1816 판결 206

광주지방법원 2007. 12. 24. 선고 2007가합4624 판결 147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195 판결 120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1409 판결 13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9. 19. 선고 2006가단4557 판결 114, 163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113, 115, 145, 156

창원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가합170 판결 116

창원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나7878 판결 160

2006년도 법원별 판례

대법원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126, 190, 191, 192, 194, 195, 20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140, 141, 142, 14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7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90, 192, 196, 199, 200, 20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197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162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06. 1. 24. 선고 2005나20936 판결	145, 150, 187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121, 122, 150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나29589 판결	122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180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132, 161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나298 판결	127
-------------------------------------	-----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4601 판결	183, 185
--------------------------------------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784 판결	2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3가합70749 판결	146,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카기9504 결정	1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133, 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2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140, 1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14032 판결	1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5가단286190 판결	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174, 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단98871 판결	151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7829 판결	1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107, 119, 1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단72458 판결	2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	1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59554 판결	1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4583 판결	2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173, 176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4고단3130 판결	206, 20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98 판결	208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가합14166 판결	115
--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고합141 판결	212
---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06. 3. 20. 선고 2005노4596 판결	2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단16980 판결	173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6가합516 판결	190
---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고단3244 판결	206
--	-----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가합1120 판결	127
---	-----

2005년도 관할법원별 판례

대법원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113, 117, 119, 123, 137, 138, 139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7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04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34, 135, 136, 138, 148, 157, 16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1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21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209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51426 판결	117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05. 1. 11. 선고 2004나44089 판결	127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114, 117, 144, 164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	113, 114, 144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114, 124, 134, 144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142, 143, 154, 155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5나11833 판결	14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126, 138, 139, 154
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135, 137, 138, 15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162, 1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1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2가합52966 판결	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4가합12160, 2004가합19373(병합) 판결	1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가단275759 판결	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185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카합2433 판결	1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175, 181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나5344 판결	164
-------------------------------------	-----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05. 7. 14. 선고 2004가단55233 판결	152
---------------------------------------	-----

언론소송 판결에 대한 쟁점별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언론 소송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언론소송의 모습과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표현의 자유를 찬양한 바 있으며, 근대 시대에 인간이 제일 먼저 회복하고 재창조하고자 한 자유가 바로 이 언론의 자유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17세기 자유이론가 존 밀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는 죽이는 것이다”라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존 밀턴은 그의 저서 <아레오파지티카>를 통해서 언론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반대하고 국민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절대적 자유로 보는 시각은 17, 18세기부터 시작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종래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이고 절대적 자유로 보는 시각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종전의 무제한적 언론의 자유 개념은 현실감각에 맞게 수정·발전되어 ‘적절하고 상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로 보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여전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고 핵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자기의 사상을 제한 없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개인의 지고한 인격과 가

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며, 또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 등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그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언론의 자유이든 인격권이든 양자 모두 중요하고도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자 기본권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언론소송에서의 중요한 사명은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희생되는 인격권의 조화점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衡量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언론소송의 사명은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희생되는 인격권의 조화점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론소송이란

통상 언론소송이란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피해자가 언론매체를 상대로 민사상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통칭한다. 소송 실무상으로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법인체나 사업체,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등이 피고로 되었을 경우에 이를 보통 “언론사를 상대로 한 언론사건(이하 ‘언론사건’이라 한다)”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언론사건”에 관한 소송을 “언론소송”이라고 한다.

3. 우리나라 언론소송의 모습

가. 법적 구제수단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원상회복청구,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영금지가처분 등 금지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권침해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이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경우나 민법 제764조에 의한 원상회복청구는 본안사건으로 처리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방영금지가처분과 같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처분은 신청사건으로 다루어진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는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언

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절차를 따르게 되었다.

나. 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996. 3. 1.부터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본안사건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언론전담부를 두고 중요한 언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 제25부가, 서울고등법원은 민사 제13부가 담당하고 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2000. 3.부터 명예훼손전담부서가 지정되었다.

다. 재판의 진행

언론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본안사건의 경우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는 것, 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은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는 것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3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명예훼손적인 보도가 언론사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는 것은 주된 청구원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신청사건도 그 신청원인은 동일하며, 일반신청사건

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사건은 신청사건에 준하여 처리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한 본안제소명령제도도 적용이 없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이러한 심판절차는 잠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 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창설된 단행적 가처분에 유사한 본안 절차이다.

라. 관 할

(1) 사물관할

소송물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액을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이 된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도 합의부가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고 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따라서 민법 제764조상의 명예회복을 위한 원상회복청구는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합의부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의 소송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2) 토지관할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의하고, 사무소,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언론소송에 있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언론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또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무이행지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가 되므로, 원고는 자기의 주소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으로 처리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의 관할은, 원고인 피해자가 제1심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26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소송은 통상 언론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구제를 받는 방법 이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 중재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구 「방송법」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중재전치주의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전치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을 하거나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절차는 조정과 중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조정절차는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 입장을 조율·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이고, 중재절차는 양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전제로 하여 중재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은 중재결정과 달리 불복하고자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법 제22조).

이러한 조정·중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수집한 2005년, 2006년, 2007년 언론소송 판결 약 390건(1부 통계적분석대상 판결 349건+ 그 외 판결 40여건) 중 판결 150개를 선정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인격권 법리를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1. 명예와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들은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접 원고 자신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69303 판결

서울특별시에 속한 공무원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서울특별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당사자

언론사건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기타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자가 원고이고, 그 주장의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MBC-TV는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서울시청 공무원이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원고 A가 청계천 개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에 없음에도 피고 문화방송 소속 기자와 보도본부장이 서울시 공무원인 원고 A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그로 인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원고 A와 원고 A가 속한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가. 원 고

죽은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유족들이 직접 자신들의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하여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유족들은 명예를 훼손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들(문화방송 취재기자와 보도본부장)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속한 공무원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하여 그로 인해 원고 서울특별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가사 그로 인해 원고 서울특별시에 속한 대다수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서울특별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사망한 망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더불어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망인들에 대한 명예감정, 주목감정이 침해되어 원고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원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

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등을 그 사무범위로 하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구성원 전부인 것은 아니며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서울특별시는 그에 속한 공무원들 및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서울시청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속한 공무원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하여 그로 인해 원고 서울특별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가사 그로 인해 원고 서울특별시에 속한 대다수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서울특별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6918 판결

나. 피고

보통 경제 능력이 있는 언론 매체 운영자인 법인을 주된 피고로 삼고 취재 기자, 발행인, 편집인, 정보 제공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1) 외주제작의 경우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의 책임

서울고등법원은 외주제작계약에 의해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는 의뢰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편집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프로듀서는 의뢰한 프로그램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주제작계약에 의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는 당해 프로그램에 의해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외주제작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A(제작을 의뢰한 방송사)는 피고 C(제작계약에 의해 제작을 맡은 회사)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를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C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D(제작을 의뢰한 방송사의 프로듀서)로서는 <병원 24시>의 프로듀서로서 <병원 24시>를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에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제작계약에 의하면 <병원 24시>와 관련하여 피고 C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피고 C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A 및 피고 C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정해 둔 데 불과하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외주제작계약에 의해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는 당해 프로그램에 의해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포털사이트의 책임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 포털사이트의 책임

노컷뉴스 기사는,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과 대화 도중, 이명박 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의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발언내용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욱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기사는 곧바로 씨비에스아이(노컷뉴스팀을 운영하는 회사)와 뉴스 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욱,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그러자 전여욱 의원은 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하

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와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 엔에이치엔은 자신들은 기사 작성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은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연대하여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

언론으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아 뉴스를 서비스하는 포털사이트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포털사이트 운영자와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사이에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언론사와의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가 될 뿐이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망인 A의 어머니는 싸이월드 내에 있는 A의 미니홈피에 원고가 망인 A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망인 A가 첫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정자덩어리일 뿐이다” 등의 극언을 하였으며,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의 합의 간청을 매정하게 거절하여 망인이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망인의 미니홈피에 접속자수가 폭주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또한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취지의 카페가 개설되고, 서명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을 통하여 위와 같이 네티즌들이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현상을 전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에는 망인 A의 실명을 밝히거나 A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포함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으며, 위 기사들에 달린 수많은 댓글 등을 통해서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편집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포털사이트 내에 개설된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 영역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물이 게시된 것을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포털사이트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포털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점,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기사들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중의 망인의 미니홈피 사진, 망인의 실명, 댓글 등을 통해 쉽게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②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은 검색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며, ③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현물에 대하여 항시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영역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

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게시물이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표현물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

①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사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류하고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고,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포털사이트의 포털앨범에 올린 이미지 파일로 인하여 명예 훼손이 되는 경우 포털사이트가 책임을 지는지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네이버’ 상에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여자 연예인 원고와 관련하여, 포승줄 및 수갑을 찬 죄수복 차림의 원고 사진, 필로폰 주사 중인 원고의 패러디 사진, 필로폰 소주광고의 패러디 사진, 필로폰과 감옥을 연상시키는 패러디사진, 원고의 편지 등이 담긴 사진 등이 등록되어 이 이미지파

일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이미지파일들을 발견하고 여러 번 ‘네이버’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에게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명예를 훼손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여자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 방송 등에 출연이 거절되는 등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포토앨범 서비스사이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 등록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삭제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측이 피고에게 위 이미지 파일들에 관한 삭제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위 이미지파일들이 검색될 수 있도록 방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① 피고가 포토앨범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수시로 등록하는 이러한 이미지파일들을 일일이 검색하여 삭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원고 이름을 키워드로 한 이미지파일의 검색을 차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통상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의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6나48160 판결

포털사이트는 포토앨범 서비스사이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 등록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삭제의무를 진다.

(3) 정보제공자 또는 취재원

보통 보도에서 취재원이라고 불리는 자는 다양하다. 익명의 제보자가 취재원이 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일 수도 있다.

취재원이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언론 보도가 되었을 때 이러한 취재원이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정보제공자나 취재원이 방송 또는 신문에 보도될 것을 예상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언론매체와 사이에 자기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기로 미리 통모하거나 승낙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통모나 승낙이 없더라도 방송 또는 신문에 보도될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한 자 역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40098 판결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어 명예훼손이 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자료가 후에 언론에 유출되어 간첩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A가 간첩죄로 처벌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A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그러자 원고 A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국군기무사령부와 국회의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간첩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원고를 검거된 간첩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자료

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국정감사 자료를 제공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료의 오류나 조작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박O 의원은 이 자료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언론사에 유출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와 박O 의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되어 ‘간첩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원고가 ‘간첩죄’로 처벌받은 것처럼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인 국군기무사령부와 박O 의원의 과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책임을 져야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영사처벌 받은 범피사실의 내용만으로는 사전적 의미로는 물론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도 원고를 간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군수사기관으로서 간첩이라는 법률적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는 간첩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원고를 검거된 간첩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이 사건 자료를 국회의원인 박O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국정감사자료를 제공받은 박O 의원으로서 그 자료의 오류나 조작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경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자료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언론기관에 유출시킨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국군기무사령부와 박O 의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어 간첩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원고가 간첩죄로 처벌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명예훼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778 판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원고를 검거된 간첩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어 명예훼손이 된 사건에서, 국군기무사령부는 간첩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원고를 검거된 간첩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이 사건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과실이 있고, 국정감사자료를 제공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료의 오류나 조작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경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자료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언론기관에 유출시킨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과 명예훼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그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된 경우

원고는, 한국방송공사가 언론사들에게 한국방송공사의 세금관련 소송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전직 직원이었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보도 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책임을 져야하고, 이 사건 보도 자료를 작성한 자는 사실상 작성자로서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각자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에 대한 입증은 없는 한, 피고 A(한국방송공사 사장)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사실상 작성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부사장), D(정책기획센터장)의 경우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대

하여 결재 등 여하한 형태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6나103531 판결

한국방송공사가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자료의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보도 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책임을 져야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한 자는 사실상 작성자로서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수사기관이 작성·배부한 보도 자료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된 경우 보도 자료를 작성·배부한 경찰관들과 경찰관들의 관리감독주체인 대한민국의 책임

경찰에서 살인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보도 자료를 작성·배부하였는데,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살인사건의 피의자이던 갑남과 살해된 을녀가 교체를 해 오던 사이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자 을녀의 유족들은 허위보도로 을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보도자료를 작성·배부한 경찰관들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갑이 유부남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과 대한민국이 ‘갑남과 을녀가 사귀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작성·배부함으로써 살해된 을녀의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보도 자료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하여 약 10개월 전부터 교체를 해오던 사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갑이 유부남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보도 자료의 배부로 을의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자료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도 자료의 배부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자료나 이 사건 기사들은 살인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것이고,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의 수사 및 보도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그 살해 동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갑남과 을녀의 관계에 대하여 적시한 부분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진실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갑과 을이 사귀었다’는 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피의자 갑이 수사기관에서 10개월 동안 을과 사귀어 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경찰관들에게는 갑과 을이 사귀었다는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찰관들과 대한민국은 피의자 갑남과 살해된 피에자 을녀가 교체를 해오던 사이라고 적시한 보도 자료의 배부로 을녀의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살인사건의 수사 및 보도과정에서 피의자와 피에자와 관계 및 그 살해 동기가 중요한 점에 비추어 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익성이 있으며, 피의자 갑이 수사기관에서 을녀와 사귀어 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경찰관들에게는 갑과 을이 사귀었다는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판결을 살펴볼 때, 수사기관이나 대한민국은 수사기관의 보도 자료의 배부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대한민국이 보도 자료에 적시된 내용이 공익성이 있으며 진실하다고 입증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의 전직 사무장이 언론에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 내용이 기사화된 경우 전직 사무장의 명예훼손 책임

변호사의 사무장이 해고되자, 사무장은 변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법원 기자실을 찾아가 기자에게 위 변호사가 브로커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자신을 부당해고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을 하면서 이를 기사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 내용이 기사화되자 위 변호사가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 기자, 취재원인 위 전직 사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취재원이 되었던 전직 사무장은 자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실제 기사화된 이상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전직 사무장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언론사와 기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되었다.

“피고 A(정보를 제공했던 사무장)는 위 고발장 등을 접수한 날 법원 기자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 B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 C에게 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내보이면서, ‘나를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고 OO지방변호사외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기사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중략)…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가치를 침해할 의사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로 인해 주장과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실제 기사화된 이상 이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기자에게 기사화에 쓸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실제 기사화된 이상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3. 피해자 특정

보도의 행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가. 특정의 정도와 기준

(1) 일반론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본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

(2) 피해자 특정이 인정된 사례

“김 아무개 중사” 사건

대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A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김아무개 중사”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나, 기사의 내용 중에 “김O과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 “특전사 출신” 등 원고 A의 군대 내 직책, 출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김O의 사망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였고 그로 인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그에 관한 수차례 보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혹은 적어도 원고 A와 같이 근무하였던 군인들이나 원고 A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김아무개 중사”가 원고 A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 A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원고들 소속 학교 이름을 적시하고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적어도 원고 등을 알고 있는 동료 교사 등은 그와 같은 표현이 학내분규 당시 재직 중이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인 원고 등을 지칭함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김 씨”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추적 60분> 프로그램에

서 원고를 “김 씨”라고만 지칭하여 그 실명이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음성이 방송내용 중 변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되었고 더욱이 원고의 명함이 화면에 확대되어 방영되었는데 당시 사무실 주소부분이 선명히 보였을 뿐만 아니라 종로에 있는 원고의 회사 사무실 내부와 사훈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며, “1973년 설립된 직물원단을 생산하는 회사”라는 해설과 함께 원고의 강화도 공장 내부 역시 그대로 방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의하면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위 방송에 나오는 “김 씨”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특정된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OO시 공무원” 사건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앵커나 기자가 “OO시 공무원”, “OO시청 농촌지도사”라고 말하였고, 방송화면으로 문제가 된 사찰 현장 및 OO시농업기술센터 건물 및 현판을 보여 주었는데,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공무원이 원고 A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가 원고 A로 특정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인동지원 2007. 9. 19. 선고 2006가단4557 판결

“A 변호사” 사건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사내용상,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긴 하나, 그들의 직업이 특정되어 있고 위 사무장의 나이 및 민사사무장으로 근무한 시기 등을 적시해 놓고 있어 변호사 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A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피해자 또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쌍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인터넷쇼핑몰 사이트가 특정되었는가

KBS-TV <8시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꽃배달업체들이 중개수수료로 대금의 40%를 수수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꽃배달 쇼핑몰 사이트를 배경화면으로 방영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오인하게 하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들은 메인화면의 상단 중앙에 쇼핑몰의 분위기와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유의 메인이미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은 메인이미지는 당해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메인이미지가 드러났는지 여부가 피해자 특정 여부의 판단에서는 도메인 이름 못지 않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고 볼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이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은 아니고, 일부 상품의 사진과 일부 메뉴바의 노출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식별이 어렵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이트 메인화면의 메인이미지가 노출되어 이 사이트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 사건 사이트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는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사이트의 경우에도 그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도메인 이름이나 상호, 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래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편의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화면 구성방식을 추구하다 보니 쇼핑몰마다 메인화면 구성방식이 대동소이

한 경우가 많아, 텔레비전 화면에 특정 쇼핑몰의 메인화면 중 일부분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시청자들이 해당 사이트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들은 메인화면의 상단 중앙에 쇼핑몰의 분위기와 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유의 메인이미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은 메인이미지는 당해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메인이미지가 드러났는지 여부가 피해자 특정 여부의 판단에서는 도메인 이름 못지 않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이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보도에서의 둘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장면이나 이 사건 제2보도에서의 첫째 장면과 같은 일부 상품의 사진과 일부 메뉴바의 노출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식별이 어렵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보도의 첫째, 셋째 장면과 이 사건 제2보도에서의 둘째 장면에서 이 사건 사이트 메인화면의 메인이미지가 노출되었고 그 중에서도 뒤 두 장면은 메인이미지를 클로즈업한 화면이어서, 이 사건 각 보도를 시청한 사람 중 적어도 이 사건 사이트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메인이미지 장면이 포함된 원고의 메인화면 방영 부분을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사이트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사이트의 방영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사이트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가합14166 판결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들은 메인화면의 상단 중앙에 쇼핑몰의 분위기와 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유의 메인이미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은 메인이미지는 당해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메인이미지가 드러났는지 여부가 피해자 특정 여부의 판단에서는 도메인 이름 못지 않은 중요한 요소로 평가 된다.

“김 모 교수”와 “박 모 씨” 사건

인터넷 신문인 뉴시스에 원고들이 간통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성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성씨, 나이 및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특히 2005. 6. 29. 자 및 2005. 11. 29. 자 각 기사에서는 간통혐의로 구속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같은 해 <OO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O-OO과 OO”라는 제목으로 우수상을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같은 미술 대전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들이 OO 모 대학 미술학부 소속의 사제지간이라는 사실까지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경우 위 각 보도에 나온 “김 모 교수” 및 그의 여제자 “박 모 씨”라는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각 기사에서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5157 판결

* 참고: 미국 보스턴 지역의 고등학생 사진 보도 사건

한 일간지에서 “Suburban 고등학교 10대들의 짝짓기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보스턴 지역의 10대들의 난잡한 성생활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한 고등학생의 사진을 내보내었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원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료사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이 학생이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Stanton v. Metro Corp.(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2006. 2. 23)

(3) 피해자 특정이 부정된 사례

“사건 당사자의 가족” 사건

창원지방법원은, 연합뉴스가 검사 폭행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그 검사를 폭행한 자를 “사건 당사자의 가족” 또는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당사자의 형”이라고 표현하였을 뿐 달리 원고의 신상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바, 수많은 당사자들

이 검찰에 폭행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사자의 가족” 또는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당사자의 형”이라는 표현 정도로는 위 기사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을 지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원고를 지목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가합170 판결

“우리는 노예였어요” 보도 사건

원고 A회사는, SBS-TV에서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 “우리는 노예였어요” 제목의 보도에서 피고 에스비에스가 원고 A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묘사하고, 피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 회사의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편집·방송하는 등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 A회사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 에스비에스가 몰래 촬영한 부분(피고 학생들이 원고 A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의 경우, 원고 A회사의 건물외경, 사무실 입구 등 원고 A회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원고 A회사 직원의 얼굴 등은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되었고, 원고 A회사 직원의 음성 역시 변조되어 방영된 사실은 원고 A회사도 다루지 않고 있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 A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 시청자들이 위 방송 부분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 A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원고 A회사는 이 사건 방송이 원고 A회사를 환불도 해주지 아니한 채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

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 있는 업체로 묘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은 갑의 피해 사례와 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음, 그 중 갑의 피해사례를 특정하여 갑을 알선한 국내 업체가 그 피해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점, 곧이어 일부 노동부 등록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터넷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그 순서,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말하는 불법 업체가 바로 원고 A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A회사의 건물외경, 사무실 입구 등 원고 A회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원고 A회사 직원의 얼굴 등은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되었고, 원고 A회사 직원의 음성 역시 변조되어 방영되었고,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터넷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고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 A회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된 “김 씨”사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방송사가 <최재원의 양심추적>을 방송하면서, 원고의 얼굴전체와 원고가 이용한 승용차의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원고가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말하는 부분에 일부 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외에 원고의 음성을 모두 변조한 상태로 방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택의 대문, 차고와 정원, 거실의 모습이 비춰진 것만으로는 앞서 방영된 <추적 60분>과 관련지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기 전에는 방송의 고액채납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방송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514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가단2254 판결

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1) 일반론

언론사가 명예훼손의 보도를 하면서 집단 명칭을 사용하거나 집단 중 특정 몇몇 사람만을 지칭하였을 경우 이것이 집단 구성원들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이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발언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단표시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부정한 사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그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위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40여 명이고, 그 구성원의 변화가 언제나 있을 수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문사위원회의 성격이나 전문위원이라는 위문사위원회 내에서 원고들의 지위나 중요도 등에 비추어, 위문사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그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의문사위원회”라는 집단 명칭으로 그 구성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정부 기구로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직원으로는 파견된 공무원 20여 명,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 등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위문사위원회 40여 명의 인원 수와 그 구성원의 변화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문사위원회의 성격, 전문위원이라는 위문사위원회 내에서 원고들의 지위나 중요도 등에 비추어, 위문사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이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그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스스로는 위 표현이 지칭하는 이른바 간접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일반인이 바로 그들이 원고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위문사위원회라는 집단명칭으로 그 구성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가단275759 판결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이라는
집단 표시를 함으로써 그 집단의 구성원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이 사건 보도에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이라는 집단 표시에 의해 그 집단의 구성원인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의원인 원고가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은 기사 내용상에서 원고와 A의원이 동일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위 A의원이라는 집단표시 속에 원고가 포함되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문제가 된 기사에서 취업 청탁 부분은 원고의 실명이 분명하게 적시된 반면, 갑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정수기업체에 취업하였다는 부분에서는 그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적시되지 않고 ‘A, B 의원’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다음날 후속기사에서 위 A, B 의원과 원고가 동일한 인물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갑이 원고의 지역구 사무실에 취업을 청탁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 마치 원고가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지급한 것처럼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고는 위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이라는 집단 표시 속에 원고가 포함되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74575 판결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의 표시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의원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사 내용상에서
원고와 A의원이 동일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표시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참고: “미시시피 배심원”이라는 집단 표시로 배심원단

개개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

미국 방송사 CBS는 미시시피 지역에서 결성된 배심원단의 평결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미시시피 배심원”이라는 표시로 배심원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Gales v. CBS Broadcasting Inc, (US Court of Appeals of the Fifth Circuit, 2005. 3. 3).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

“검찰”의 불법감청 의혹 보도 사건

일간지 사설에서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사설에서는 ‘검찰’이라고만 표시하였을 뿐이나,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설들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보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사설의 문면에 의하면, 문제된 각 감청행위의 주체로 ‘검찰’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 각 사설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진00와 광00 사이의 휴대전화기 통화 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 것인바,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각 사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청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바, 감청행위의 주체로 “검찰”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나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 “시장 측근”의 수뢰 의혹 보도 사건

MBC-TV가 <MBC 뉴스테스크> 프로그램에서 서울시청 공무원이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여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 되었다.

재판부는 방송보도에서는 원고 A가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 또는 “시장 측근”으로 표현되어 직접적으로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서울특별시 시장의 비서관은 총 4명이고 서울시청의 공무원이나 청계천 재개발 관련업자들로서는 부동산개발업자나 한나라당 전 지구당 위원장을 만난 사람이 원고 A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 4명에 지나지 않는 비서관들 모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장 비서관의 1인인 원고 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6918 판결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
 또는 “시장 측근”으로 표현되어 직접적으로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서울특별시 시장의
 비서관은 총 4명이고 서울시청의 공무원이나
 정계전 재개발 관련업자들로서는 이 보도가
 원고 A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 4명에 지나지 않는
 비서관들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00경찰청 00과 소속 경찰관인 원고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00경찰청을
 표시함으로써 원고들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카드깡” 보도 사건

MBC-TV <뉴스데스크-카메라출동> 프로그램에서 “경찰이 카드깡”이라는 제목으로 00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오래전부터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카드깡이 행해져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00경찰청은 연금매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렇게 받은 수수료는 경찰청의 최고위층에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00경찰청 소속 00과 소속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적 보도를 하면서 집단명칭을 사용하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00경찰청 00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00경찰청 00과 소속 경찰관인 원고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14032 판결

“독도경비대” 사건

“독도경비대”라는 표현으로 독도경비대의 구성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독도경비대는 전경대 1개 소대로서 그 구성원이 약 37명에 불과하여 독도경비대라고 지칭할 때는 그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독도경비대의 구성원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195 판결

4. 구체적 사실의 적시

가.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

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 한다.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기준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나. 제3자의 저술이나 강연, 발언의 내용을 빌려 기사화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의 특징인에 관한 기사가 직접 경험한 형식에 의하든 또는 전문한 형식에 의하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연내용을 방송하거나 이를 신문기사화하여 보도함에 있어서는 방송 시간이나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 강연 내용 전체를 보도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집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중심 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동일성 없이 모호한 형태로 방송 기사화하거나 특히 전체 강연 내용 중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특히 언론 보도가 학자의 저술이나 강연의 내용을 빌려 타인을 비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요청이 강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다102241 판결

강연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그 강연 내용 전체를 보도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편집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언론 보도가 학자의 저술이나
강연의 내용을 빌려 타인을 비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가 왜
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요청이 강하다.

진중권씨 강연 왜곡 보도 사건

피고 조선일보가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진중권이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정치강연회에서 강연한 말을 인용해 “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보도를 하자 오마이뉴스

는 오연호 기자가 진중권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보도로 오마이뉴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원고 오마이뉴스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하였고, 양당 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조선일보가 진중권의 강연 내용 중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인용한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자가 직접 제3자로부터 들은 말인지 그 제3자 이외에 다른 중간 전달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그 발언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측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마치 진중권이 오연호 기자한테 직접 들은 것처럼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하였고, 이에 덧붙여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 집단”이라는 문장을 적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중권의 강연 취지를 왜곡하여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진중권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 집단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제1심 판결에 더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진중권의 강연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강연 취지를 왜곡하여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진중권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 집단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영부인 비하 발언 보도 사건

MBC-TV는 <신장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 연사로 등장했던

원고의 발언 일부만을 의도적으로 편집함으로써 원고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언론기관이 특정 사실의 보도 및 이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방송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인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발언자의 진위 또는 그 발언자의 발언 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발언의 앞뒤를 생략하여 일반인들이 발언의 의미를 오해할 위험성이 있도록 편집해서는 안된다”며 “2차 방송에 나타나는 원고의 전체적인 발언내용은 남OO의 자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자질을 비판하면서 영부인의 학력을 예로 든 것이고 그 발언내용이 직접적으로 영부인의 학력비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와 관련된 탄핵지지집회의 내용에서 원고가 남OO의 자살과 관련한 대통령의 자질 등을 비판하는 과정을 거두절미한 채 원고가 영부인을 비하하는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보도한 것은 언론기관의 편집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이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문화방송, 프로듀서, 그리고 기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78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나29589 판결

타인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발언자의 진위 또는 그 발언자의 발언 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발언의 의미를 오해할 위험성이 있도록 편집해서는 안된다.

원고의 전체적인 발언내용은 영부인의 학력비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원고가 영부인을 비하하는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보도한 것은 언론기관의 편집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이다.

다. 논평 또는 의견표명

우리 법원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1) 의견 또는 논평이라도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이로써 별도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의견 또는 논평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6가합98182 판결

검찰의 불법감청 의혹 보도 사건

일간지 사설에서 검찰이 불법으로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자 이에 검찰관계자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설에서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순수한 논평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 제1 사설은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첫 문단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00와 강00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시한 뒤,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써, 검찰이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감청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였으며,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진00와 강00이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고,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비록 위 사설 중에는 통화 내용의 공개가 이례적이라든가 감청이 아님을 강조한 점이 석연치 않고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적시한 부분 등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가 사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사설의 제목과 앞서와 같은 사실들을 포함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사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사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검찰의 감정 의혹에 대한 사실에서, 검찰의 통화 내용 공개가 이례적이라든가 검찰이 감정이 아님을 강조한 점이 적언치 않고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의견 또는 논평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실은 검찰이 불법감정을 한 다음 그 감정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정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논평으로 본 경우

“지역 정가에선 ‘조선인 권OO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가 지난해 구청장 선거 공천파동에 이어 대선을 거치면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부산일보가 원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 “지역 정가에선 ‘조선인 권OO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가 지난해 구청장 선거 공천파동에 이어 대선을 거치면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단지 지역정가라는 표현을 빌어 원고의 지역구 의정활동이 미흡하다는 피고 전OO(기자)나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판결

“이번 소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를 지녔다”는 부분은 소송 및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교육신문이 학부모가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수업결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및 그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전제로 ‘OOO 후원회’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번 소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를 지녔다”라고 한 것은 그 소송 및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평한 데 불과하므로 그것이 논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적시된 전체사실과 별도로 원고 등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유령조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사저널이 제목에서 원고 조합을 “유령조합”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사실적 주장(즉 원고 조합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급조된 사실, 조합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빌려 조합비 명목으로 계약금이 치러진 사실, 1994. 10. 12.부터 뒤늦게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사실, 원고 조합이 13년간 ‘가칭’으로 활동하면서 설립신고를 내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조합은 최초 설립 당시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단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순수한 의견 개진인 것으로 보고, 유령조합이라는 말이 위 사실적 주장 이외에 또 다른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원고 조합을 “유령조합”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원고 조합이 최초 설립 당시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단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순수한 의견 개진이다.

“알박기식 가치분” 보도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사저널이 원고 조합의 소송 경과 등을 전제사실로 적시하면서 원고 조합의 가치분신청을 ‘알박기식’ 가치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소위 ‘알박기’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 부지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신조어로서, 시사저널의 위 표현은 원고 조합의 위와 같은 가치분신청이 권리를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알박기’와 유사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순수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의견의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위 의견 개진 부분이 따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가합46051 판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교통부가 동아일보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문체된 기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이OO 장관이 취임 후 차관, 감사관, 물류혁신본부장, 기만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비서관을 호남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다”는 부분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으로 위 각 부분의 성격을 살펴보면, 앞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뒷부분은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소속 장관이 지나치게 연고 위주의 편중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의견을 표명한 이상 위 의견이 위 사실 이외에 또 다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서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선일보가 원고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시계가 그 가격에 맞는 내실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라고 한 부분은 비록 피고 조선일보가 각 기사에서 이 사건 시계를 지칭함에 있어 “가짜 명품시계”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소위 명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특정 상품의 명품 여부에 관해 각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가 다른 사실의 적시 없이 바로 이 사건 시계를 가짜 명품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이 지칭한 점, 따라서 그와 같이 지칭한 근거가 된 사실의 적시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서 이 부분이 따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6가합98182 판결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라는 부분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위 명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
특정상품의 명품 여부에 관해 각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이 지칭한 근거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이 지칭하였고, 따라서 그와 같이 지칭한
근거가 된 사실의 적시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자의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
서,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
우에는 그것은 의견 표명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문제 대상이 그 제3자
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
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
를 사실적 주장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
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
한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
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이것은 언론사의 의견 표명의 한 방법에 해당하나,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

(3) 어떤 사실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 또는 논평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방법

우리 법원은,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체가 되는 사실이 중
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체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
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
다.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참조

(4) 의견 또는 논평이 그 한계를 일탈하여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분열적 정신상태” 표현이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는 “지OO과 늑대”라는 제하
의 기사로 원고를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
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
판하였다.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의견표명은 모멸
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
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오마이뉴
스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항소한 2심 판결에서 서울고
등법원은, 원고가 낸 광고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5·18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난

과 반발을 유발하였고 원고가 낸 광고의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의 한계를 넘어 관련자들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이로 인해 원고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표현의 정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광고의 내용, 표현을 감안하면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1. 11. 선고 2004나440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8. 선고 2002가단249152 판결

원고가 낸 광고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광고로 비난과 반발을 유발하였으며 그 광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다.

“몰염치가 도를 넘어섰다”, “노골적으로 제 밧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등의 표현이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제주일보가 “골프장 재벌 00000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사실로 원고가 골프장 입장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하여 제주도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자신의 이윤을 위해 일방적으로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여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사실 중 의견표명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은 ‘몰염치가 도를 넘어섰다’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기를 수차례다’, ‘제주도 골프관광 경쟁력 추락은 안중에도 없다’, ‘노골적으로 제 밧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기업윤리는 아랑곳없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잘 나가는 한국 골프장 재벌이었다’, ‘한마디로 재벌의 안하무인

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재벌이면 재벌답게 기업윤리를 지키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들은 다소 감정적이고 거칠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서 언론인인 피고 김OO 으로서는 그러한 표현을 자제하였어야 마땅하나, ① 이 사건 사실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제주도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인상한 것을 비판하는 데에 있는 점, ② 이는 원고의 입장요금 인상이 제주도 내 다른 골프장의 입장요금에도 영향을 미쳐 제주도 내 대부분 골프장의 입장요금도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제주도 내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짐으로써 결국 제주도의 관광산업까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 점, ③ 이러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이 사건 사실 중의 의견표명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의견표명이 비난이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위법성이 있는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나29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721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가합1120 판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 발언이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오마이뉴스는 A 국회의원의 술자리에서의 폭언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A 국회의원은 위 보도를 접한 후 자신은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오마이뉴스는 자신이 성적 폭언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보도자료, 성명서,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을 통하여 “오마이뉴스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황색 사이비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이다”라고 평하였다. 이에 오마이뉴스가 A 국회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A 의원의 발언 중 “오마이뉴스가 허위 보도를 하였다”는 부분은 진실하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 A 의원의 오마이뉴스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관하여는,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 내지 모욕에까지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 오마이뉴스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견표명 내지 논평의 경우 그것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 한 그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의견표명이 전제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평가함으로써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의견표명 자체에 의하여도 의견표명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발언 중 오마이뉴스를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이라 지칭한 것은 오마이뉴스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의도적 사건 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사에 나타난 의견이 전제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은 피고가 이미 직접 적 시하였고 그에 대한 진실성 내지 상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부분이 의견표명 그 자체로서 별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본다.

오마이뉴스를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언론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떤 요소가 음결되었다는 정도의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것으로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하겠고, 피고의 발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원고가 언론사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이비언론 내지 반사회적 악덕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 내지 모욕에까지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발언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2910 판결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언론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떤 요소가 음결되었다는 정도의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것으로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은 것이고, 원고가 언론사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이비언론 내지 반사회적 악덕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할 것이어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 내지 모욕에까지 이른다.

* 참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보도 사건

한 잡지 기사에서 9.11사태 이후에 발생했던 탄저균 우편물 배달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원고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는 보도를 하자 원고가 이 기사를 쓴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거짓말쟁이(liar)”, “파렴치한(rascal)” 등으로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Hatfill v. Foster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05. 11. 3)

라. 만평 · 시사 만화

만평 · 시사 만화에 의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한 두 컷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

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만화, 만평에 의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풍자하는 만평이나 만화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은유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러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MBC의 이명박 선전 만평 사건

원고 문화방송은 동아일보가 만평을 통하여 원고가 대선주자인 이명박만을 선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아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네 컷 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만평의 내용은, GT(근태) DY(동영)는 안 띄우고 특정주사 선전만 하는 방송에 대해 여당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그림들과 함께, 마지막 컷에 MBC라고 적혀 있는 종이를 보면서 “명박씨”라고 읽는 장면으로 끝맺음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일보의 만평 작가가 당시 여당 및 그 대선주자들의 저조한 지지율을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명박(MB)과 원고(MBC)의 이니셜이 동일한 점에 착안하여, 여당 및 여당 대선주자들은 아마도 MBC가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이명박(MB)만 선전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엉뚱한 핑계거리라도 찾고 싶을 것이라고 희화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아일보의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① 이 사건 만평이 게재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김근태, 정동영 등 여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이명박을 비롯한 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보다 현저히 낮았던 점, ② 피고 A는 평소 자신의 다른 시사만화에 서도 특정인물이나 단체의 두문자 또는 이니셜을 이용해 언어유희를 하는 기법을 즐겨 사용해왔던 점, ③ 당시 원고가 야당의 특정 대선주자에 유리한 편파 보도를 한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보도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이 사건 만평에서 원고가 이명박만을 선전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여당측 인사인 것으로 묘사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만평은 작가가 이명박과 원고의 이니셜이 동일한 점에 착안하여 ‘문화방송(MBC)이 자신과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이명박(MB)만 선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전혀 엉뚱한 핑계거리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 여당 및 그 대선주자들의 처지를 희화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이 사건 만평이 단지 이니셜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원고와 이명박을 결부시킨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생뚱맞아 보이지만, 만평을 보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만평이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이명박만을 선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합4733 판결

이 사건 만평은 여당 및 여당 대선주자들이 ‘문화방송(MBC)이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이명박(MB)만 선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전혀 엉뚱한 핑계거리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문화방송이 이명박만을 선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드라마·영화

(1) 드라마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록 그 형식이 다소의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그 드라마가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일 경우에는 픽션드라마보다 그 명예훼손책임이 가중된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관한 드라마가 방송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에서 묘사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드라마의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록 그 형식이 다소의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그 드라마가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일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그 내용이 이미 존재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픽션드라마보다 그 명예훼손책임이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 판결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 제작, 방송하는 드라마도 작가와 프로듀서를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드라마에서도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어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문화예술의 한 기법인 소위 팩션(faction: 사실을 뜻하는 fact와 허구를 뜻하는 fiction의 합성어) 기법이 드라마 등 예술의 각 분야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법이 사용된 드라마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해 그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즉 ① 드라마의 근본적인 제작목적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정면으로 재조명하는 것인지 여부, ②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이 중심인물인지 배경인물인지 여부, ③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각 차지하는 비중, ④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

조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드라마에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허구적 요소보다 사실적 요소가 강조된 소위 논픽션 역사드라마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대로 사실적 요소보다 허구적인 요소가 더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강하게 인식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므로 드라마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비록 드라마에서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약간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묘사만으로 실존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 (병합) 판결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해 그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논픽션 역사드라마의 경우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대로 사실적 요소보다 허구적인 요소가 더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5공화국〉 “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 방송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의 36회분 “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을 방영하면서 당시 안기부 특별보좌관이었던 원고 박OO이 안기부에 의하여 윤OO의 살인사건이 간첩사건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작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협조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협조는 위 조작사건을 통하여 노태우의 대권도전을 위한 개헌정국의 타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숨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가 살인의 희생자를 간첩으로 몬 정치공작행위에 협조하는 등으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 극본 작가, 연출자, 제작 본부장, 드라마 국장 등은 이 사건 방송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 판결

드라마 <제5공화국>의 "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을 방영하면서 당시 안기부 특별보좌관이었던 원고 박00이 안기부에 의하여 윤00의 살인사건이 간첩사건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작사건을 묵인하면서 나아가 협조까지 하였는데, 이 같은 협조는 노태우의 대권도전을 위한 개인정국의 타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숨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KBS-TV 드라마 <서울1945>가 장택상, 이승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

이승만과 장택상의 유족은 KBS-TV가 방영한 드라마 <서울1945>가 장택상과 이승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재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

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운형 암살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 (병합) 판결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재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영화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법원의 입장은,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통상적으로는 허구임을 전제로 하지만, 관객의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때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영화제작자 등을 상대로 하여 문제되는 장면의 삭제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망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왜곡 등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가족이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영화 <실미도>의 모델이 된 일명 ‘684 부대’ 훈련병의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사건

원고들(일명 ‘684 부대’ 훈련병의 유가족들)은 영화 <실미도>의 영화제작사(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 주식회사 한맥영화)와 영화감독이 영화 <실미도>에서 일명 ‘684 부대’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서 어차피 사형에 처해질 신분으로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복과 공작원의 길을 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묘사하고, 이들이 마치 용공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영화의 시작자막, 영화포스터, 영화광고 및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영화가 32년을 숨겨온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사실로 믿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영화제작자와 영화감독)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이 망인들을 포함한 훈련병들 전원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의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은,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에게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당시 실미도에 관한 국외외의록, 언론보도, 고위공직자의 진술, 원작인 소설 실미도 등에 훈련병들의 신분에 관해 ‘군특수범’, ‘사형수나 무기수로 극형에 처어져 복역하고 있던 죄수들’, ‘사형수 출신의 부대원들’, ‘범법자, 광패들’ 이라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영화에서 묘사한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는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병들의 전과관계와 모집경위는 물론이고 그 신원마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 이외에 다른 사실 확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망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유족인 원고들의 진술을 쉽게 청취할 수도 없었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영화의 상영 이전에는 이 사건 망인들이 684부대 훈련병으로 모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③ 역사적 사실의 각색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는 상업영화에 있어서 영화제작자에게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이 행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중분한 사실 확인 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에서 망인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그들과 극중 배역을 연관지을만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영화 <실미도>에서 '684 부대' 훈련병들
전원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영수 또는 사외의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은, 망인들 또는 망인들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에게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이 상당하여
피고들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영화 <그 때 그 사람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원고 박지만은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픽처스가 제작, 배급한 영화 <그 때 그 사람들> 중 특정 장면이 허위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유족인 원고 자신의 인격적 법익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의 상영 및 배포 등의 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영화나 소설과 같은 주관적인 창작적 표현행위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서도, 그것이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을 암시하거나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하시키거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면 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하여 극 중 인물과 이야기를 창출한 경우, 독자나 관객에게 흥미와 감동을 주기 위하여 부여한 현실감 있는 표현으로 인해, 합리적인 독자나 관객이라도 창작된 극 중의 허구를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실제 인물의 모습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이 허구와 진실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장면이 일반인의 관용성과 감각에 비추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야기할 내용을 담고 있거나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아니할 사적인 생활영역을 표현

한 것이라면, 그 표현으로 인해 실존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됨으로써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다 할 것이고, 그 실존 인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관객의 입장에서 허구임을 인식할 수 있어도 완전히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여 그 표현 안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가 느껴질 때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 극 중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여도, 허구의 표현 자체가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표현으로 인해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가 원고가 고인의 유족으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영화로 인해 원고의 공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영화로 인해 원고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된 정도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영화 상영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제2부-제5장-5. 금지청구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하여 극중 인물과 이야기를 창출한 경우에,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야기할 내용을 담고 있거나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아니할 사적인 생활영역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관객의 입장에서 허구임을 인식할 수 있어도 완전히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여 그 표현 안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가 느껴질 때에는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바. 기타

(1) 종교적 의견표명

우리 법원은, 언론사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종교단체가 이단이나 여부를 조명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종교적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단(異端)이라 함은 ①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②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의미할 뿐이므로, 언론사가 특정 인물이나 종교단체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물이나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곁들여 보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만으로는 종교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1409 판결

(2) 유머, 농담, 패러디

* 참고: 투나잇 쇼(Tonight Show)의 진행자 제이 레노의 농담 사건

뉴욕타임즈는 마릴린 드레이크라는 여성이 난자를 기증하였다는 보도를 하였고 이 기사에 이 여성이 자신의 개와 함께 있는 사진을 실었다. NBC 방송사의 간판 쇼인 <The Tonight Show>의 진행자이자 코미디언인 제이 레노는 쇼 앞부분에서 최근 뉴스 소식들에 대한 농담을 하면서 위 마릴린 드레이크의 사진을 보여주며 드레이크가 자신의 개에게 자신의 난자를 기증받을 것인지 물어 보고 있다는 등 짓궂은 농담을 하였다. 그러자 마릴린은 제이 레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이 레노의 말은 명백히 농담이었으며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Marilyn Drake v. Jay Leno, et al (San Francisco Superior Court, 2006. 6. 15)

* 참고: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약자어 'BUFU'의 사용한 것이 'FUBU'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For Us, By Us'를 의미하는 'FUBU'라는 의류회사인데, 피고 영화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영화에서 'By Us, Fuck

You('빌어먹을'이라는 의미의 미국 욕설)를 의미하는 'BUFU'의 약자어를 이용하자 원고는 자신의 상표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피고 영화사는 이를 패러디로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상표에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GTFM LLC v. Universal Studios Inc.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06. 5. 16)

5.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가. 일반론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 표현에 원고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나. 판단기준

우리 법원은,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특허청, 발급실수 기업파산” 보도 사건

KBS-TV가 ‘특허청, 발급실수 기업파산’이라는

제목 아래 ① 원고(대한민국) 소속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잘못된 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를 발급하였고, ② 위와 같은 잘못된 우선권증명서류의 발급으로 인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일본 기업에 기술을 도용당하고 파산위기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위 우선권증명서류에 조작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허청 업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특허청 업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이혼사실이 밝혀진 경우

원고들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 문화방송은 MBC-TV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고 부부가 국제가정 송년회에서 무대로나와 노래하며 춤을 추는 장면을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동의 없이 위 장면을 약 36초 정도 방송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국제결혼을 한 사실 외에 간접적으로 원고 A의 이혼사실까지 밝혀지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

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상권 침해도 인정되어 원고 A에게는 300만원, 원고 B에게는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원고 A의 이혼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다. 피의사실 보도와 명예훼손

우리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 보도시 피의자의 범행을 단정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거나, 일반 독자들에게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보다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피의자인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고 있다.

“신문기사의 제목이 본문에 비하여 활자의 크기나 지면 면적에 있어 훨씬 크고, 피의자이었던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피고 A일보는 ‘퇴직자 각종 소송 금품받고 대행’, 피고 B일보는 ‘택시회사 노사문제개입 금품 갈취’, 피고 C일보는 ‘위원장 직분이용 금품갈취’ 등으로 각기 제목을 달았다) B일보와 C일보는 피의사실을 왜곡보도하거나 피의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추가 기사화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제목의 크기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근로자로부터 소송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신문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라. 공연성과 명예훼손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명예 감정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수사보고서와 같은 내부적인 업무서류의 작성행위가 공연하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적인 업무서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작성행위를 공연하다고 할 수 없어 명예가 훼손되는 등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부함으로써 그 보도자료에 적시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의 작성·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0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B, C 등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부검의뢰서 등에 갑과 을 사이를 내연관계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적인 업무서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작성행위를 공연하다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하여 을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으로 그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하여 약 10개월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사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갑이 유부남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부로 을의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적인 업무서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작성행위를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6.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가. 일반론

언론소송에서는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피고의 항변이 진행된다.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와 판례와 학설이 위 요건에 추가하여 인정하는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이라 일컫기도 한다)가 그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와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1)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으로서 언론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

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도 행위자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되는지 여부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미국법상 공인관련 보도의 ‘현실적 악의’ 이론

1964년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은 미국 명예훼손법의 역사적 판결이다.

New York Times 판결에 의해 전통적인 보통법상의 명예훼손법은 중대한 수정을 겪게 되는데, New York Times 판결은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하였다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판결의 다수의견의 요지는,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ity)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 행위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자나 언론사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의 Brennan 대법관은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있어야 하고,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라고 하며(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공적 사안에서의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심사 기준

우리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감시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경우에만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공적 영역의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가 아니라면 그 보도는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된다는 의미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언론의 자유가 더욱 보호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3다37524, 37531 판결 참조

(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보도로 언론의 자유의 제한이 완화된다고 본 사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

우리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

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판검사들이 원고로부터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여부에 관한 보도

“제3방승의 주된 쟁점은 판검사들이 원고로부터 사건 알선의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그 사실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그 정도의 암시와 의혹의 제기는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770 판결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보도

대법원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감청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이 사건 제1사실의 내용은, 그 첫머리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OO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OO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다음, 이어서 그와 같이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 ① 검찰이 전 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② 검찰이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것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 ③ 검찰이 공개한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기록으로 되어 있는 점, ④ 한 달도 더 남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의 구체적 정황을 제기하면서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추가예명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도청과 감청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이미 보급대수 1,000만 대를 넘어서 국민의 생필품이 된 휴대폰마저 도청된다면 국민생활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도청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수사기관의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사설 중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한 쟁의행위 등 원고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이라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돌발영상”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국회의원인 원고는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의원석에 앉아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있던 YTN의 촬영기자가 촬영하였고, YTN는 <뉴스Q 2부> 프로그램에서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특히 ‘법조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는 앞으로 ‘변호사 검직’ 불가! 의원 개인 수입 감소!”라는 자막이 나오는 장면, 원고가 법사위 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였다.

원고는 YTN이 원고가 이미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묘사하고,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에게 한 얘기를 마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한 것처럼 자막을 내 보내고, 같은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악수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보도하여 열린우리당 의원인 원고가 마치 사적인 이해관계를 탐하고 한나라당과도 가깝게 지내는 이중적인 인품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공식 발언이나 의정활동이 아닌 동료의원들과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YT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의 ‘돌발영상’ 프로그램은 그간의 일방적인 정제된 뉴스를 전달하는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돌발적으로 포착한 정치일선의 현장을 보여 주어 정치기사에 관한 풍자성과 현장성을 제고한 새로운 뉴스전달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 및 동

영상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국회의원들의 법사위 등 비인기 상임위 기피와 그로 인해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 및 그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보도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의용 의원”을 “정의화 의원”으로 잘못 처리한 자막이나 원고가 말하지 아니한 “... 갈까? 한나라당?”이라고 처리한 자막이 있으나,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의 보도내용, 보도경위 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풍자적인 보충설명이거나 일부 평가적 요소의 전체된 사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표현방법 등이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113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106066 판결

‘돌발영상’ 프로그램은 돌발적으로 포착한 정치일선의 현장을 보여 주어 정치기사에 관한 풍자성과 현장성을 제고한 새로운 뉴스전달 방식으로, 이 사건 방송은 국회의원들의 법사위 등 비인기 상임위 기피와 그로 인해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비인기 상임위인 법사위에 배정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도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언론사에 대한 비판·감시 기사인 경우 위법성 판단 심사 기준

우리 대법원은,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6가합115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98394 판결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언론사가 힘을 행사하여 썸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

피고 문화방송이 원고 동아일보가 언론사로서 힘을 행사하여 썸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원고가 언론사로서 부당하게 힘을 행사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점과 원고가 실제로 일반 기업들보다는 썸 이자로 대출을 받아왔으며, 공적 존재인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혹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원고가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한 것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

가 있거나 다소 수치를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방송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공적 존재인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들의 권유유착과 관련된 보도를 한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MBC와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일명 ‘이상호 기자’의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X파일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우선시하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 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으로서, 이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재벌, 특정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목적이 원고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거나, 그것이 원고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문화방송과 소속 기자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을 ‘주악한 커넥션의 당사자, 권력과 언론의 검은 커넥션, 독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신문, 스스로 권력화하는 무소불위의 매체, 국민의 알권리나 공정보도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부도덕한 권유유착, 그 부정의 뿌리, 신문사들이 신경 쓰는 것은 자사의 이익, 혹은 재벌의 권력’ 등으로, 원고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정권과 문민정권 창출 과정에서 대통령 메이커의 역할을 자임한 조선’으로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방송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원고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거나, 그것이 원고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98394 판결

MBC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이상호 기자의 X파일’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비판하면서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다 국정원의 불법 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공적 인물

공적 인물 혹은 공인(公人)에 대하여 통일된 개념은 없다. 그러나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는 언론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언론 보도에 의한 비판의 수용 한도, 익명보도의 원칙의 적용, 보도에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칙을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는 공인이다.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칙경력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국회의원인 원고는 공인이고 그 내용 또한 직무와 관련된 공적인 내용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106066 판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법무부 차관은 공인이다

“원고는 문제가 된 기사에서 수리 시점으로 주장하는 시점에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당시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어서 중요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 참고: 스포츠 스타를 치료했던 유명 쪽병전문의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치료했던 쪽병전문의의 경우, 그의 홍보 활동으로 유명해졌으므로 법원은 그를 공적 인물로 보았다. Carver v. Bonds (California Superior Court San Francisco County, 2004. 7. 30)

나. 공익성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우선 명예훼손의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7. 9. 16. 선고 2005다6276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를 비난한 보도

원고 조선일보는, MBC가 <뉴스플러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넥션”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일명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하면서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에 관해 원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해 방송함으로써 원고가 마치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 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안기부 X파일’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로 단정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록 이 사건 방송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보인 지난 대선에서의 보도행태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은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우선시하는 피고들과 달리 원고와 중앙일보가 국정원의 불법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러한 원고와 중앙일보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원고 및 중앙일보와 개별 및 특정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유착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행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경위와 내용, 그리고 원고와 중앙일보가 국민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언론사인 점,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에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지난 대선에서의 보도행태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

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59554 판결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으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공익성을 인정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의 배우자가 최근 5년간 1,455,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원심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의 배우자가 최
근 5년간 1,455,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판결

원고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진○○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수뢰 시점으로 주장하는
2008년 8월경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
이었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당시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어서 중요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민정수석비서
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사정 업무의 최종적인 총괄·조
정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및 인사자료를 수집하여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에 상
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진○○으로부터 금융감독
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정

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각 기
사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항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방송사의 대표이사가 방송사를 정치적 홍보를 위해 활용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을 거론한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주된 내용은 인천지역의 유력한 공중파 방송인
‘인천방송 아이티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인방송의 대표
이사인 원고가 경인방송을 개인적 목적, 즉 원고의 정치적
홍보를 위해 활용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서, 방송의 일반대중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고려하
여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
하고 있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방송시
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나 그 산하 경인방송 소속 조합원들이 오로지 원고를 경인방
송 대표이사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폭로하
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나 그 산하 경인방송 소속 조합원들
을 지지 내지 지원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
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627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5나11833 판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부유층 인사들을 고발하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추적 60분> 프로그램 방송 당시
는 지방세 체납실태가 언론의 주요뉴스로 보도됨
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때
로, 담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부유층 인사들을 고발함으로써 납세의무

에 대한 국민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대하여 고의적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위 방송이 기획, 제작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방송은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공동경비구역에 우리 군이 배치된 이래 최초로 발생한 장교 사망 사건에 관한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김 O 사망사건은 우리나라가 유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에 배치된 1991년 이래 최초로 발생한 장교 사망사건으로서 제 15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어 있던 1998. 2. 24. 에 일어났고, 그 사인을 둘러싸고 군수사당국과 유족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사인에 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건의 진상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김 O의 사망이후 원고 김 O O 등의 대복첩족 및 근거문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군내 의문사에 관한 일반적 관심이 증폭되어 가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 국민에게 안보에 관한 경각심을 고양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관한 국민의 의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의 필요성이나 내용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

교사들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정의행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수업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관한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 및 인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정의행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수업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그로 인해 학생들 및 학부모

모들이 입을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후, 그와 같은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피고 OOO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그 소송 및 판결의 경위 등을 알리고 그 판결의 의의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0000 신문’의 독자인 교직원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원고 등과 분쟁 중인 타방 당사자인 피고 OOO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을 반영하고 있고 원고 등의 반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가 원고 등을 비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5나6923 판결

공익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성추행을 저질러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서도 자신의 주식지분을 이용해 위 신문사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던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었고, 그 이외에도 ‘2005 OOOO’ 운영위원장, ‘동아시아 시민사회 포럼’ 공동대표 등 여러 사회단체의 중요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인물이었던 점, 위 각 보도는 이처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던 원고가 성추행을 저질러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서도 다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식지분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추천하려고 하는 등 위 신문사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도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가합1826 판결

출판업과 관련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가 국가산업단지를 분양하고 관리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생긴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출판단지는 건설교통부가 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인바, 피고들은 출판업과 관련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가 위 단지를 분양하고 관리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생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가합17426 판결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부당해고하여 그 직원이 변호사를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변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고발하였다는 내용 등은 변호사업의 특수성과 수임비리에 따른 폐해를 적절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국회의원의 욕설 보도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1, 4, 5, 6 기사와 이 사건 성명서는 공적 인물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주태를 부린 적인 여러 번 있었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제7기사는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기사와 성명서의 내용은 모두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5가합98321 판결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라도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면 공익성이 인정된다

“기사의 내용이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구

성원 전체의 이익이나 관심과 관련된 것이면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 24. 선고 2005나20936 판결

(2)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가) 범죄사건 보도와 공공성-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

우리 대법원은,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경우 일반 국민들이 그 신원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익명 보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경우 일반 국민들이 그 신원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 자료에 나온
적발업체 중 일부 적발업체를 실명으로
공개한 사건**

피고 연합뉴스, 디지털조선일보, 한겨레플러스, 한국아이닷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점검결과 발표를 토대로 “정신과 의사인 원고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직원을 시켜 약을 조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여 원고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평범한 정신과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이 언론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도 일반 국민들이 피고들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원고 운영의 병원 등 위반업소들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보도하였거나,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소유 전제보도에 관한 계약에 따라 또는 그 기사를 기초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송하였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고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국민들이 보도에 적시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공인이므로 신원이 공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A에 대한 피의사실이 보도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는 사단법인 0000000 협회의 회장으로서 모 신문에 “A의 승마교실”이라는 칼럼을 게재해 오고 있었고, 원고의 대외적 활동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특히 경향신문은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3가합70749 판결

(나) 피의사실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에 공공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은, 언론사들이 원고 주00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과거 폭력 전과나 대마관리법 위반의 범죄경력을 보도한 것에 대해, 기사의 주된 보도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내용과 동종의 전과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부분에 관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경력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다) 사인간의 개인 분쟁에 관한 것

한국방송공사는 A가 자신의 고려청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B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을 보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보도내용은 사인간의 개인적인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도내용

으로 보아 공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359 판결

다. 진실성

명에 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내용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나2149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3 판결

공금횡령사건 보도

전남매일신문은 18차례에 걸쳐 00시향의 공금횡령의혹 등을 보도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초청공연 무단참석 및 협연비 임의 집행, 전형위원 위촉업무 부당처리, 급여통장 이중관리, 일반운영비 편법 집행, 단원 복무관리 소홀 등 상당 부분이 00시의 감사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보도내용은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가합4624 판결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의 보도에 진실성이 인정된다

피고 A는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의 기자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00지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취재한 다음 “행정실장 폭행 시위”라는 제목 하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와 전교조 00지부 등은 오늘 00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 폭언과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00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의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과 관련해 00교육청은 사건을 은폐한데다 가해자는 훈장을 받고 피해자는 징계를 당했다며 교육청측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인 교장의 홍조근정 포장을 즉각 회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등 7개항을 요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뉴스시간에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들은, 원고 B와 000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들이 그 폭행사건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 없이 원고 B가 일방적인 가해자라거나 원고 B가 00교육청과 공모하여 자신을 잘못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홍조근정 포장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담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B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상당한 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그들의 활동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나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주최한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지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

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그 이외에 원고 B와 000 사이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작성자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주장하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원고 B는 000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좀 더 완곡한 표현이 가능하였다거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6가단79121 판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간통혐의 형사사건의 보도

뉴시스는 원고들의 간통 혐의 사실에 관한 보도를 하였고, 원고들이 뉴시스와 그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도에서 원고들이 간통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한 부분은 그 자체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도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취지의 단순한 경과 보도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마치 그 혐의내용이 분명한 진실인 것인 양 오인될 수 있도록 확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내용을 덧붙이게 될 경우, 그와 같은 보도는 진실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5157 판결

원고들이 간통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한 부분은 그 자체로 객관적 사실이므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마치 그 혐의내용이 분명한 진실인 것인 양 오인될 수 있도록 확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내용을 덧붙이게 될 경우, 그와 같은 보도는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실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라. 상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무와 확인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

(1) 상당성 판단 기준

법원은 상당성 판단시 여러 가지 사정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상당성 여부는 명예훼손에 있어 다른 법적 쟁점들보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더 크다.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 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가)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

언론사가 북한 당국이나 민경련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민경련과 공식적 접촉을 하여온 공기업이 민경련으로부터 받은 팩스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게시물은 상당성이 있는 취재원이 된다

“이 사건 방송 및 기사는, 피고 A, B, C가 직접 북한 당국이나 민경련과 접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당시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유일한 발급기관인 민경련과 공식적인 접촉을 하여 온 공기업인 피고 D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민경련으로부터 이 사건 팩스를 송부받았다면서 공개적으로 이를 인용하여 게재한 이 사건 게시물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의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40098 판결

‘A가 000를 비롯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였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에 상당성을 인정한 사건

서울지방법원은, A가 성추행으로 진정을 제기당하자 두 차례 공식적 사과를 하고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몇몇 언론매체에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의 원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점 등에 비추어, 이 보도에서 ‘A가 성추행하였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정모씨 및 000로부터 원고가 자신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당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매체에는 ‘나는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는 등 마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의 원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점,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직 사퇴 이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위 신문사의 주주총회에서 자

신의 주식지분을 이용해 위 신문사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표이사 임명안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직접 다른 대표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점 등의 사항들이 엮여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000를 비롯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였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각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가합1826 판결

언론사가 수사기관이 배부한 보도자료를 신뢰하여 이 보도 자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같은 수사기관에서 을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4. 8.경부터 개인적으로 만나온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같은 매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을의 남자친구 또는 직장 동료로 보이는 000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살해현장인 양평방면으로 갈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및 보도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그 살해 동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살인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경위의 발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살인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게자가 10개월 전부터 을과 사귀어 왔다는 갑의 진술을 진실하다고 믿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부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고, 피고 E언론사가 수사기관이 배부한 위 보도자료를 신뢰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역시 동일한 이유로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나)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로 표현한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

의 제목을 ‘내언너’로 표현한 이 사건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420 판결

보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인 고소장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므로 언론사나 기자들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을 하였어야 한다

“피고들에게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비록 위 기사 보도 무렵 원고가 직원들로부터 광고료를 갈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국음식중앙회 이사회에서 그에 대처하자는 회의까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보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인 000, 000 명의 고소장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을 하였어야 하고, 특히 피고 000, 000로서는 피고 000이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실 확인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6. 1. 24. 선고 2005나20936 판결

강연의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취재기자가 강연내용을 메모한 정도의 조사절차는 불충분하고 발언의 신뢰성,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강연자에게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피고 조선일보가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진중권이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정치강연회에서 강연한 말을 인용해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자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 대표이사인 오연

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등 조선일보가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훼손이 되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원고 오마이뉴스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하였고, 양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취재 기자가 기사 취재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진중권의 강연을 듣고 있다가 진중권 강연 내용 중 진보논객인 진중권이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데스크에 보고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취재기자는 진중권의 강연내용을 녹취한 바도 없고, 강연내용을 메모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적어도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연호 기자에게 직접 전해들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을 진중권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특별히 어렵다고도 보이지 않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도를 한 것은 그 내용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거물브로커가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사차레 드나들었다는 보도

일요신문은 “이해찬 총리-거물브로커 윤OO(A),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 제목의 기사 및 “구속직전까지 함께 라운딩 즐겼다”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A와 함께 골프를 쳤고, 원고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에는 A가 총리공관을 수사차레 드나든 것으로 밝혀져 원고와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일요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거물브로커 A와 A의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요신문 기자가 거물브로커 A의 측근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이를 기사화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사회부장으로부터 보강취재를 지시받고 기사화를 늦추어 OO골프장의 관계자로부터 브로커 A의 측근들로부터 들은 말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듣게 되자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화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라고 하였다.

그러나 ② 기사 중 브로커 A가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요신문 소속 기자는 브로커 A의 측근인 최OO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들은 말 외에는 달리 확인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가단98871 판결

거물브로커 A가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기사 부분에 대해서, 일요신문 소속 기자는 브로커 A의 측근인 최OO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들은 말 외에는 달리 확인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무총리 양주파티 보도 사건

인터넷신문 프린티어타임즈는 “이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총리는 그날 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으면서 양주가 아닌 복분자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 언론사에게 이 사건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사는 보도대상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82 판결

국무총리가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보도 기사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풍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가 아니고 빈주 안두산 결들인 것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사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가 제시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남도민일보사는 “정비사 업주, 절도혐의 부인 · 맞고소 … 경찰수사”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을 “공무원 노조원 짜고 고소”로 작성하여 시청공무원 C가 쟁의중인 정비공업사 노조원 A와 짜고 정비공장 업주 B가 C의 차엔진을 몰래 절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고소를 당한 정비공장 업주 B는 C 공무원이 노조원 A의 교사를 받아 이미 B에게 양도한 차량을 이전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아갔다고 하며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자 정비공업사 노조원 A는 위 신문사와 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부제목부터 의혹 제기 정도가 아닌, “공무원 노조원 짜고 고소”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공업사 노조원인 원고 A가 시청공무원인 C의 무고를 교사했다는 정비공장 업주 사장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물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기사를 접한 일반인에게 노조원인 원고가 공무원 C로 하여금 사장인 B가 고객의 차량엔진을 몰래 절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도록 하였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피고들

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았다.

피고 기사는 정비공장 업주 B를 만나 그로부터 시청 공무원 C가 작성한 진술서, 녹취록 등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원고 A를 고소한 당사자인 정비공장 업주 B가 제시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위 사장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위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보도는 그 내용상 고도의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고소 상대방인 원고 A를 통하여 정비공장 업주 사장 B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기사는 이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5. 7. 14. 선고 2004가단55233 판결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대업의 제보를 받아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이회창의 아들들이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와 이를 국회 대정부 질문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신기남 의원은 원고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신검판정 관련 군의관에게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함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신검 부표를 파기할 것과 관련자는 함구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오연호, 신기남, 김대업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신기남의 발언 내용, 오마이뉴스의 보도 내용, 김대업의 제보 내용은 모두 국군의무사령관으로서 고위공직자로 볼 수 있는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나, 피고 김대업이 피고 신기남,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내용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나아가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여겨지므로, 제보 내용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신기남의 발언 역시 다른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회창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고, 국군 춘천병원에 신검 부표를 파기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 오연호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피고 오연호 등의 한나라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피고 신기남의 대정부 질의내용, 피고 김대업을 상대로 한 확인 취재 및 그밖에 다른 여러 관련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보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사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 요지를 객관적으로 인용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보도행태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보도는 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보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기한 의혹이 모두 진실함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원고가 한나라당 인사들의 병역비리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이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상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2가합52966 판결

특허청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한 보도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는데도 취재로부터 보도까지의 기간이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였고,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제보 외에는 다른 분쟁당사자로부터의 확인 또는 객관적인 전문가로부터의 조력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서 언론사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하였다.

“피고 소속 기자인 000의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과정을 보면, ① 특허청 및 박00 변리사로부터 00공업이 00마케팅으로부터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관한 일본국 내에서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권리를 양수하였을 가능성을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00마케팅 또는 00공업에 위 권리의 양도사실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취재로부터 이 사건 보도에 이르는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시급한 보도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보도내용은 매우 단정적이어서 특허청의 명에 및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신중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000의 제보 외에는 다른 분쟁당사자로부터의 확인 또는 객관적인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조력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내용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서 그 취재과정에서 진위 여부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보도내용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11. 15. 선고 2005나9090 판결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서 그 취재과정에서 진위 여부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보도내용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검찰 간부의 제보를 받고 원고의 수뢰사실을 보도한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정보 제공자인 검찰 고위간부라고 하

는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 정보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 취재도 하지 않았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지 2일 만에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입증과 달리 당심 증인 이00의 증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당시 사외부 차장이던 이0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심 증인 이00은 자신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된 원고의 수뢰 사실이 수사 중에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았고 자신과 그 고위간부와의 평소 친분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보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위 검찰 고위간부가 악의적으로 중앙일보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거나 신원이 밝혀지면 원고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그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00의 증언 태도 및 위 증언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과연 이00이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쟁사 의심스럽다.

설령 이00이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00은 유무일 오우에 당일 저녁에 만나자는 검찰 고위간부의 전화를 받고 은밀한 장소에서 동인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그것이 어떤 내용과 형식이었는지 알 수 없다)를 근거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그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 취재도 하지 아니한 채 정보를 받은 지 불과 2일만에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보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의 도덕성·정령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제보자의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 취재도 하지 않아 상당성이 부정된다.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일과 연봉에 관한 보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조선일보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의 휴일을 누리면 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되기 전인 2003년 2월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월 3,346,628원인 사실,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된 후 평균 근속연수인 14.4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기본급에 평일 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합하면 연 4,288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성과급과 격려금을 더하여 연 4,827만원 정도인데, 위와 같은 임금을 얻기 위한 근무시간을 평일 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 4회에 의하여 ‘1년 중 302일 동안 하루 10시간씩’으로 연간 휴일 수는 63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 165일 내지 177일간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피고 언론사가 논평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어 상당성이 부정된다

(2) 피의사실 보도와 상당성 판단

피의사실에 관한 언론 보도의 경우 법원은 상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 자료 또는 정당한 발표권자에 의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거나, 당사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관련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가) 피의사실 보도시 언론사의 주의의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

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계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617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6가단1910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0. 18. 선고 2007가단1861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계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

수사책임자의 공식적인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상당성이 인정된다

“① 위 기사는 부천시가 추진하였던 실내스키장 건축의 인·여가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고, 검찰 역시 언론보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식적으로 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던 것인 점, ② 피고들이 위 사건을 직접 처리하였던 수사책임자의 공식적인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게재하였던 점에서, 사실확인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피고들로 하여금 추가로 기사를 게재하였던 점에서, 사실확인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피고들로 하여금 추가로 그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기사 제목이 다소 자극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 기사 내용은 피고들의 주축이나 판단은 신기 않은 채 검찰의 발표내용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단

지 전달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원고 등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게재하였던 점, ④ 또한 피고 주식회사 000신문사, 0000신문사는 원고의 반론도 함께 게재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들이 위 기사를 게재한 방법과 사용한 어휘, 피고들의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언론기관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0. 18. 선고 2007가단18616 판결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기자가 제보를 받은 뒤 검찰 등 관계기관과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상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이 사건 기사에 주된 내용은, A는 원고를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위 A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여 허탈해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 기자가 제보를 받은 뒤 검찰 등 관계기관과 원고에게 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점도 인정되는 바이어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경원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4359 판결

경찰관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발표 및 배포한 보도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된 기사를 보도한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된다

경향신문은 “‘강남 사모님들’ 농락한 가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판사, 국정원 파견 검사, 국제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여 부유층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수십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대한승마경영자협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사단법인 대한승마경영자협회 A씨(44세)에 대한 사기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1996년 부인과 이혼한 뒤 한 승

마클럽 대표이자 대기업 임원의 부인인 L씨(52)에게 변호사라고 속여 내연의 관계를 맺으면서 ... 한편 A씨는 대한승마경영자협회 회장 자격으로 99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 일간지에 ‘A승마교실’이라는 기명 고정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한국일보, MBC-TV, 여성중앙도 같은 취지의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형사판결을 통하여 보도에서 다루어진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기관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범인 또는 범죄 혐의자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저지른 범죄혐의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보도의 내용으로 된 원고에 대한 기본적인 범죄혐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도내용 중 법원에서 일부 유죄의 판결을 받지 못한 부분이 피해자의 신분 또는 피해액 등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진실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2000. 8. 하순경부터 이미 피해자

B를 포함한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경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였던 사실, 피고들 소속 각 기자들은 원고를 수사한 담당 경찰관을 만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증거물로서 원고로부터 압수된 가짜 판사 명패, 가짜 신분증 등을 열람한 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보도를 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보도는 원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할 당시에는 위 보도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3가합70749 판결

(다) 상당성이 부정된 경우

경찰 내부문서나 비공식적인 확인작업을 한 후 피의사실을 보도한 경우 기사에 대한 상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범칙사실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피고 00일보 소속의 000기자와 피고 00일보 소속의 000기자가 0000경찰서에 취재를 위하여 들렀다가 경찰서 내의 당직대장, 업무보고서 등 경찰 내부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을 발견한 후 그에 대하여 0000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사실확인 작업만을 거쳤을 뿐 원고를 직접 면담한다거나 그와 같은 면담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취재를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지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9. 14. 선고 2004나261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2가합9215 판결

연예인의 성폭행 혐의 보도 사건

대법원은, 언론이 정확한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고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인 인터뷰 내용만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별지2, 4, 6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는, 피고 언론사들과 소속 기자가 보도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체의 특성이 보도의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 또는 월간지여서 사실 확인의 요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에도 정확한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터뷰 내용만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이 위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보도의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 또는 월간지여서 사실확인 요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에도 정확한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터뷰 내용만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것은 피고들에게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이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다는 보도

한국일보는 원고 국회의원이 특별사면, 세무 조사 등의 무마 등의 구체적인 청탁 명목으로 000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피고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은 이 보도가 공적 인물인 원고의 수뢰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 및 관련자의 진술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록 원고가 위 회장으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교부받았거나 위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탁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 회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신빙성 높은 취재자료에 따라 위 보도를 하였거나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증취재를 하였다는 등의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가합42100 판결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신빙성 높은 취재자료에 따라 위 보도를 하였거나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증취재를 하였다는 등의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관인 김O를 살해하였다’라는 단정적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어 상당성이 부정된 사례

시사저널이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자 다른 언론사들과의 특종경쟁을 의식했음인지 원고의 대북접촉사실을 A의 살해동기로 단정하고 ‘원고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군과의 접촉사실을 은

폐하기 위하여 상관인 A를 살해하였다’라는 취지의 단정적 내용인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다. 원고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언론사 및 소속기자가 그 동안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기울인 취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취재원인 OO대학 관계자와 경찰관계자의 말만 믿고 3,000만원 수뢰 보도를 한 사건

세계일보는 “A 치안감 3,000만원 수뢰”라는 제목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관에서 A 치안감이 OO대학교 재단 이사장 B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000 00 모자 회장으로 부터 3,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하고, 위 B 이사장을 소환하여 돈을 전달하고 수사정보를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으며, 위 치안감에 대하여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고, 위 이사장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치안감 A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OO대학교 재단 이사장 B에 대한 재단공금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같은 재단 측에 유출하거나, 그 유출대가로 재단 측 인사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 정보 유출건 등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B 이사장을 소환조사한 사실도 없고 A나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등의 방침이 정해진 바도 없었다.

이 사건으로 취재기자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세계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취재원을 OO대학 관계자 및 경찰관계자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이상 신빙성 있는 정보원에 접근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수취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취액수가 3,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OO대 관계자의 추측성 진술만 믿고서는 그 수취액수를 3,000만원으로 특정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사가 구체화되고 사실성을 띠게 한 점, B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는 정보원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B를 소환하여 조사를 완료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수취사건에 관하여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게 한 점 및 경찰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에 대하여 불구속수사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웠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와 같은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취재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없고, 피고 취재기자가 정보원인 OO대 관계자 및 경찰관계자의 진술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6가단19101 판결

보도의 취재원은 OO대학 관계자와 경찰관계자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이상 신빙성 있는 정보원에 접근하였는지에 관해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정보원들의 말만 믿고 수취액수를 3,000만원으로 특정하였으며 이미 B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완료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B에 불구속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건

원고는 피살된 망 A의 형으로서, A 살인사건의 담당경찰관들은 원고를 A의 살인 용의자로 의심하고 살인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자 다른 증거들로 미루어 원고가 A를 살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긴급체포하였다.

연합뉴스는 경찰청이 배부한 보도자료를 입수한 후 피의사실 관련 보도를 하였고, 연합뉴스와 기사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게재 또는 참고해오고 있던 피고(스포츠서울미디어, 경향닷컴)는 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빛 독촉 친동생 살해 유기 40대 체포”라는 제목 하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였다.

원고는 위 살인혐의 사실에 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위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사의 출처를 밝힌 사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입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원고가 동생인 A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가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

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나787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나7861 판결

피고 언론사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나, 연합뉴스가 입수한 보도자료를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보도자료의 입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언론사 또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지도 않았음에도 원고가 동생을 살해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여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신속성 요구와 상당성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사의 게재에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성의 요청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기사의 경우에는 신속성이 요구되는 기사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합6329 판결

월간잡지의 경우 신속성의 요청이 크지 않으므로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사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사의 게재에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기사 작성

을 위한 취재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월간조선’이 매달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잡지라는 점과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보도에 있어 신속성의 요청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인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합6329 판결

‘월간조선’이 매달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잡지라는 점과 기사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보도에 있어 신속성의 요청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보도하여야 하고, 기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속성이 요구되는 기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 사실 보도시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상당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경찰서 내의 당직대장, 업무보고서 등 경찰 내부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을 발견한 우 그에 대하여 0000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본인 사안에서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

도 피고들이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4) 드라마·영화의 상당성 판단

(가) 드라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논픽션 드라마의 경우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들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드라마를 그대로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 판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하는
논픽션 드라마의 경우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한다.

(나) 영화

우리 법원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우리 법원의 입장은, 영화는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즉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화의 창작 표현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의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인물의 재창조나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 작가와 감독의 상상에 의한 각색이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고, 또한 일반적인 관객으로서도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에 긴장관계를 인식하며 영화를 관람하므로 영화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망인이나 그 유가족의 인격권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창작 내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영화는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의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망인이나 그 유가족의
인격권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더 중시된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사석에서 발언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

원고가 사석에서 발언한 내용을 피고가 유인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공개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해야 하므로, 피고가 유인물에 기재한 원고의 발언은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었던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가 사인인 원고의 사석에서의 발언을 공개한 것 자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파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인물에 기재한 원고의 발언은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었던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원하지 않는 이혼사실이 밝혀진 경우

원고들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 문화방송은 MBC-TV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주인공 원고 부부(A, B)가 국제가정 송년회에서 무대로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추는 장면을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 방송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장면을 약 36초 정도 방송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국제결혼을 한 사실 외에 간접적으로 원고 A의 이혼 사실까지 밝혀지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

위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상권 침해도 인정되어(제2부-제4장 초상권의 침해-3. 피해자의 동의 참조) 원고 A에게는 300만원, 원고 B에게는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국제결혼을 한 사실 외에 간접적으로 원고 A의 이혼사실까지 밝혀지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2. 사생활과 현장 취재의 문제

OO시 소재 사찰이 사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동 MBC-TV는 OO시 공무원 A와 그의 처 B가 OO시 소재 사찰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들이 건물을 짓고 축대를 쌓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연못을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이 부재중이라서 공무원 A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였다. 그후 OO시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 취재를 한 후, <안동MBC 뉴스투데이>를 통하여 “OO시청 공무원인 원고 A가 농지에 무허가 집을 짓고, 마당에 조경수를 심고, 축대를 쌓고, 연못도 파서 불법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원고 A, B는 피고 안동문화방송과 취재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현장(OO시 소재 사찰)이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현장이 외부의 자가 들여다보거나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설령 이 사건 현장이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취재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더욱이 원고 A는 공무원이고 원고 B는 그 처이므로 그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인동지원 2007. 9. 19. 선고 2006가단4557 판결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원고가 이용하는 승용차,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활동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KBS-TV <추적 60분> 프로그램이 “수십 억 부자, 그러나 세금 낼 돈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억원을 호가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승용차에 전용기사까지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OO을 실제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처를 등재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처에게 넘기는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방송의 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서 원고의 주택을 찾아가 그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차고에서 나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뒤따라갔고, 종로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과 강화에 있는 원고의 공장을 찾아가 그 내부를 촬영하였다. 또, <최재원의 양심추적> 방송의 제작진은 서울시의 ‘38세금기동팀’과 함께 원고의 주택 앞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원고를 만나 원고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거나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러한 취재행위는 원고의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원고가 이용하는 승용차,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활동으로서 위 방송들의 기획의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거나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위 방송들의 공익성, 그 취재 촬영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3일간 원고의 주택 주변에 심부름센터의 직원을 동원하여 대기 중인 자동차에 비디오키메라를 설치해 원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은밀하게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자살사건 보도에서 자살한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의 대문과 번지수를 노출시킨 사례

원고가 소유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생활고를 비판한 나머지 함께 살던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광주 MBC-TV는 위 사건을 <9시 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원고 소유의 주택의 대문과 번지수를 노출시켰다.

이에 원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광주문화방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위 기사의 단순한 배경으로서 원고의 집과 번지수가 노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나5344 판결

3. 위법성조각사유

가. 피해자의 동의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공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에 있어서 일반 사인과는 달리 그 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도한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1. 5. 31. 선고 2000나1108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유명연예인의 결혼 보도 사건

유명연예인 왕OO(예명: 전OO)과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는 뉴시스가 “영화배우 전OO,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 전OO이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는 허위내용을 적시, 이를 뉴시스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해 원고 왕OO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하였고 이 기사로 원고는 물론 원고가 소속된 회사의 명예도 훼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여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 왕OO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왕OO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

당하는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미혼의 유명 여자 연예인인 원고 왕OO의 결혼 예정 사실 등을 보도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사가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 왕OO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OO과 결혼할 예정이었다거나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들로서는 원고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 등을 한 다음에 보도해야 함에도 뉴스소속 기자는 특별히 원고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단지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였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미혼의 유명 여자 연예인인 원고 왕OO의 결혼 예정 사실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원고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단지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다.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 <여성조선>에서 “드라마 ‘OO과 XX’의 원조 ‘OO’ 차 OO 본지에만 심경고백” 제목의 기사, 피고 동아일보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여성동아> “‘OO과 XX’의 OO역 차OO 은퇴 후 근황” 제목의 기사, 피고 학원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주부생활> “‘OO과 XX’ 궁극한 왕년의 톱스타 차OO이 직접 전한 근황인터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와 피고 학원사는 원고는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연예인이었고, 원고가 출연했던 드라마는 지금도 케이블 TV를 통해 종종 방송되며, ‘OO와 XX’의 리메이크 소식과 동시에 원고에 관한 기사가 쇄도했는바, 원고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보도한 것이며,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원고와 전화 인터뷰를 한 후 원고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과거 원고가 모 종교 위성 방송에 출연하여 과거의 일을 털어놓았던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의 내용을 보강하였으므로, 인터뷰하였다고 기사화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목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인터뷰를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와 피고 학원사는 원고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정도의 사생활에 대

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영향력 있는 타 매체에 보도되었던 부분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 동아일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1978년 경부터 TV 텔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중략) … 오이려 원고가 기자가 묻는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은 했으나, 인터뷰를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만일 위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수시로 전화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때는 언제나 그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가 있었고, 기사화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므로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인터뷰를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므로,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질문과 답변을 오갔다는 것만으로 기사화에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 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일요신문사가 “처녀 갑부 이OO XX 대표의 과거”, “이OO은 누구” 제목의 기사와 “이OO ‘사기 결혼’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아들을 전 시대에 맡겨 둔 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는 자신의 경영관, 인생관, 결혼관, 가족관 등이 이미 언론매체 또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라 할 것이고,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가 된 경위, 언론매체들과 행한 원고의 인터뷰 내용, 그로 인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일반 대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언론매체,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비록 원고는 자신의 개인 정보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원고가 임의로 공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가 과거 결혼한 전력이 있고, 사망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으며, 아들은 현재 전 시택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표현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도 보건대,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목적으로 원고의 과거 결혼 경력과 아들이 존재함을 전 시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밝히고,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고의 전 남편과의 혼인 경위, 미국 유학생할 중의 혼인생활, 전 남편의 사망 경위, 귀국 후의 아들의 부양관계 등을 적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달리 흥미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된 내용을 상당한 방법으로 게재 또는 보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 보도 사건

국회의원인 원고는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의원석에 앉아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있던 YTN의 촬영기자가 촬영하였고, YTN은 <뉴스Q 2부> 프로그램에서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특히 ‘법조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는 앞으로 ‘변호사 겸직’ 불가! 의원 개인 수입 감소!”라는 자막이 나오는 장면, 원고가 법사위 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였다.

원고는 YTN이 원고가 당시 이미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묘사하고,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에게 한 얘기를 마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한 것처럼 자막을 내보내고, 같은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악수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보도하여 원고가 마치 사적인 이해관계를 탐하고 한나라당과도 가깝게 지내는 이중적인 인품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공식 발언이나 의정활동이 아닌 동료의원들과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YT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제2장 명예훼손 6.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2)-(가) 참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대화 등 그 인격적 가치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나, 한편 언론보도에 의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현재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 중 원고가 등장하는 제3장면은 원고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공적 영역이라 할 것이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과 대화가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의 보도내용, 보도 경위 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나106066 판결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써 공적 인물이고, 원고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공적 영역이라 할 것이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생활이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표된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제4장

초상권 침해

1. 초상권 일반론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또는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합13887 판결

초상권의 내용은,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퍼블리시티권) 등으로 구성된다.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 변조된 경우 초상이 공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MBC-TV는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병원에서 처

방해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위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도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는 등의 보도를 하였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약주고 병주고”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진료 장면 및 원고 인터뷰 장면 등의 보도를 하였다.

원고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 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었는바,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가합9017 판결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 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었는바,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

같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위 사진의 삭

제와 갑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였다. 피고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갑의 개인홈페이지에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글만을 남기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진은 원고의 재요구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삭제의 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게시사실을 알고 바로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삭제요구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원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의 공간으로 제공할 뿐 사진의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이 타인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나8560 판결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때, 운영자가 피해자로부터 문제된 사진의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는 인정된 사건

원고는 퇴근 후 피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원고 병원에 와서 취재하면서 사무실 등을 촬영하고 환자들과 인터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전화상으로 피고 방송사의 직원들과 통화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에서 취재하고자 하는 환자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원고 측의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방송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그 발언 중 일부가 KBS-TV 방송에 인용되었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KBS-2TV의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10분 가량 “MRSA 수퍼박테리아의 병원 감염위험”에 관하여 그 중 3분 가량 원고 병원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여기에 사용된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음·촬영되어 방송되었다. 방송 후 원고가 피고 방송사에 항의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다.

피고 방송사는 저녁 8시 KBS-2TV의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아침 방송 내용과 동일한 영상을 토대로 비슷한 내용을 요약·편집하여 방송하였다. 다만 아침 방송에서는 클로즈업된 신문 기사의 원고 상반신이 노이즈 처리된 상태로 방송되었으나, 저녁 방송에서는 노이즈 처리를 제거하여 2~3초 가량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방송하였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피고 한국방송공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방송사가 원고 병원에서 원고 등 의료진의 잘못과 불량한 위생상태로 인해 환자가 MRSA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피고들의 보도는 설령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책임은 부정하였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 부분에서는, 피고들이 KBS-TV의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방송을 방영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 아침 방송에서 흐릿한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사무실,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를 방영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같은 날 저녁 8시 KBS-2TV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요약 방송하면서 신문에 게재된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마저 그대로 드러나게 방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고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리하게 할 것이 명백하여 원고의 반대가 당연히 예상되며 아침 방송에 대해서도 항의를 받았고 이를 드러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초상을 방송화면에 그대로 드러나게 방영한 것은 별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고 하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5가단286190 판결

2. 초상영리권(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즉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인격권인 초상권이나 성명권과는 구별된다.

코미디언 캐릭터 모바일서비스 콘텐츠 사용 사건

원고 코미디언 정준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자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는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원고는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동통신회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하여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

약정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불법사용에 해당된다

원고 행복출발은 결혼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서 원고 김OO을 회사 CEO로 영입하여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원고 김OO이 가볍게 팔짱을 끼고 있는 상반신을 찍은 사진 및 그 하단에 원고 김OO의 사인을 덧붙여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라는 이미지 광고를 실어 광고를 하여 왔다.

주식회사 엠비디는 종근당 계열사인 ‘종근당건강’의 제품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김OO, 김OO와 사이에 이들이 종근당건강식품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엠비디는 사업이 부진하자 종근당건강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재고 제품, 광고물의 사용권 등을 양도하고 폐업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중앙애드에 온라인광고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원고 김OO이 여전히 피고의 광고모델로 알고 있던 중앙애드는 온라인광고의 사인을 제작하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해럴드 생생뉴스 중 “텔런트 김OO, 재혼전도사로 나섰다.”라는 인터넷 기사에 실린 이 사건 사진을 공개된 자료로 판단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아 위 광고 시안에 삽입하였다. 피고는 김OO의 얼굴부분이 들어 있는 온라인광고를 시작하였다가 원고 김OO의 연락을 받고 위 광고를 중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이른바 초상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원고 김OO과 같은 연예인이 자신의 초상 등을 광고모델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람의 초상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 그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그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불법사용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 김OO의 동의 없이 그의 초상을 임의로 광고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OO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엠비디와 원고 김OO과의 광고계약상 모델료, 피고가 원고 김OO의 사진을 이용하게 된 경

위, 인터넷 광고와 사용된 기간, 노출량 및 조회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김OO이 피고의 위 광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는 금 3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단213731 판결

연예인이 자신의 초상 등을 광고모델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람의 초상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 그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그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불법사용에 해당 된다.

* 참고: 인터넷 서점 웹사이트에 초상 사진이 있는 책표지를 전시에 놓은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인터넷 서점에서 책표지의 이미지를 책 판매를 위해서 웹사이트에 전시에 놓은 경우 그 표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초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초상 주체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문제된 사안에서, 책표지 전시는 책 판매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관례적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상품 판촉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Almeida v. Amazon.com Inc.(U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 2006. 7. 18)

* 참고: 유명 운동 선수의 이름을 만화 캐릭터로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

전 하키 프로 선수 트위스트(Twist)의 이름을 따서 만화책에서 비열한 마피아 보스의 캐릭터를 만든 경우에, 그 작가에게 하키 선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인정될 수 있어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Doe v. McFarlane (Missouri Court of Appeals Eastern District, 2006. 6. 20)

3. 피해자의 동의

타인의 초상 사용시 초상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그 동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은 초상 주체의 피해자 동의를 얻으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1항).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KBS-TV가 <KBS 저널> 프로그램에서 불법성형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원고에 대해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해 주기로 하였으나, 눈 윗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아래 부분은 그대로 방송하여 이를 시청한 원고 주변 사람들이 원고임을 알아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KBS 저널>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처리 등의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당초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실제 막을 수 있었음에도, 실제 부작용이 문제가 된 코부분 이외에도 그 아래 부분을 선명하게 노출하여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단16980

판결

원고는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초상 사용에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외주제작사 소속 PD와 인터뷰함에 있어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PD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터뷰와 촬영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초상의 사용 등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장애인인 된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여 방송한 사건

Q채널 <휴먼스토리 레인보우>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래피티 작가로 열심히 활동하여 그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OO

의 삶을 다루면서, 그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장애인인 된 원고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원고가 현재 모습의 촬영에 대한 거부사를 제작진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여 방송하였는데, 원고를 가깝게 촬영하면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먼 거리에서 촬영한 장면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고, 침대에 측면으로 누워 있는 원고의 머리 쪽을 위에서 촬영한 관계로 원고의 얼굴이 정면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합108300 판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장애인인 된 원고가 현재 모습의 촬영에 대한 거부사를 제작진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몰래 원고의 모습을 촬영·방송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제작해 피고 문화방송에 공급, 방영하는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영분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주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

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연주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에서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 장면을 촬영한 후 드라마에 삽입하여 방영한 것은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자를 말한다> 프로그램 보험회사 판매 사건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과 피고 엠비씨프로덕션이 지난 1992년 자신의 사연을 담은 <여자를 말한다>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이후에,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이 모 생명보험에 이 사건의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국내 30여 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측의 인터넷사이트인 imbc 등에 게시하고, 출판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는 책자를 기획하고 원고의 불행한 가정사를 소재로 무단제작·판매, 유포시키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저작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고, 또한 모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프로덕션으로부터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

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방송프로그램의 판매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문화방송, 피고 엠비씨프로덕션에게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초상권이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시청자들의 주문으로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프로그램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촬영에 대한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량 복제·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고들의 송년회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영한 것은 송년회를 주최한 OO웨딩의 협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 문화방송은 MBC-TV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주인공 원고 부부가 국제가정 송년회에서 무대로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추는 장면을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 방송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장면을 약 36초 정도 방송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송년회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 사건 방송을 통해 그 내용을 방영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국제가정 송년회 행사의 취재와 촬영이 이 송년회를 주최하고 원고 부부를 연결해준 OO웨딩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고, 원고들도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그 행사내용을 촬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아무런 제지나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위 프로그램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만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밝고 훈훈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등은 피고의 주장내용과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담당자의 취재 및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위 담당자가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이 사건 송년회 행사 촬영 전후는 물론 이 사건 방송 전까지도 원고들에게 촬영이나 방송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얻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이혼과 국제결혼이라는 원고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된 점,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초상권 침해와 더불어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도 (제2부-제3장-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참조) 인정되어 원고 A에게는 300만원, 원고 B에게는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방송사가 원고들이 국제가정 송년회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위 송년회를 주최한 00웨딩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고, 원고들도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그 행사내용을 촬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계기나 이익을 하지 않았으며, 위 프로그램은 원고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직원인 피고 A가 미성년자인 갑의 친권자 을, 병의 동의 없이 갑의 초상을 촬영하고, 을의 동의 없이 을의 초상을 촬영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게 함으로써 갑, 을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와 그 사용자인 한국방송공사는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을 가지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초상 등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MBC의 외주제작사 'OOOO' 소속 PD인 김 OO이 제작해 MBC-TV를 통해 방영된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남산의 두 얼굴' 프로그램에서 원

고의 얼굴 및 음성에 대한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방송되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문화방송이 외주제작사 PD인 김 OO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문화방송은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문화방송이 아무런 조치나 확인 없이 원고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 문화방송은 문화방송과 외주제작사 사이에 외주제작계약상으로 외주제작사가 제작에 관한 모든 책임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부적인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피고 문화방송이 외주제작사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만 연히 믿은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4. 공익성

언론중재법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1항).

가. 판단기준

법원의 입장은, 초상권이라는 개인적인 이익과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이익형량을 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도는 케이티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000의 초상권이라는 개인적인 이익과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영향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합1388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나. 공익성이 초상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경우

공적 인물의 초상 사용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 <여성조선>에서 “드라마 ‘00과 XX’의 원조 ‘00’ 차00 본지에만 심경고백” 제목의 기사, 피고 동아일보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여성동아> “‘00과 XX’의 00역 차00 은퇴 후 근황” 제목의 기사, 피고 학원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주부생활> “‘00과 XX’ 궁금왕 왕년의 톱스타 차00이 직접 전한 근황 인터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에 실린 원고가 연예인 활동을 할 당시의 사진은 원고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촬영되어 이미 세상에 널리 공개된 사진이고, 이 사건 각 기사에 실린 원고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 중 ① ‘여성조선’에 실린 사진은 원고가 000 TV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진이고, ② ‘여성동아’에 실린 사진은 원고가 000 교회의 집회에서 간증을 할 당시 동아일보 사진기자의 요청에 의해 촬영되어 동아일보에 “신나는 교회... 000교회 상식 깬 세대별 전도집회 화제”란 기사에 게재되었던 사진이었다. 따라서 이 사진들

은 이미 공개되어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이미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진들이 원고의 과거 연예활동과 현재의 선교활동에 관한 보도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문제된 사진들은 원고의 연예인 활동 시절에 적법하게 촬영되어 세상에 널리 공개된 사진이거나 연개 선교활동에 관한 사진이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KT가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보도

이 사건 보도는 케이티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A의 초상권이라는 개인적인 이익과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건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 1, 2화면은 B조합을 대표한 A가 케이티의 대표자와 악수를 하거나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장면으로 제1화면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것인 점, 제2화면은 B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것으로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피고들은 제1화면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였던 점, 케이티가 부당하게 관여한 B조합의 이 사건 선거에서 A가 B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들이 제1, 2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 A의 얼굴을 공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가합13887 판결

케이트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사진이나 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익성보다 초상권이 우선 고려된 경우

출산 장려를 위한 보도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문체의 보도가 출산 장려 등의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좋을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KBS-TV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출산 장려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공익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위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거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위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제5장

기타 인격권

1. 음성권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을 비밀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 등은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 거부 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원고를 아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촬영하여 방영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49001 판결

2. 저작권

기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우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에 의 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등을 전하는 짧은 기사,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보도기사들은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되고 따라서 동일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기사와 같은 보도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나머지 기사들을 살펴보면,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체포, 구속 등에 관련된 기사(1유형의 기사) ② 단일한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기사(2유형의 기사) ③ 법원의 재판, 판결에 관한 기사(3유형의 기사)로 구별할 수 있는데, ① 1유형의 기사는 사건발생 경위, 사건의 결과, 관계자의 언급 내용,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상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 구성되고, 그 배열은 보통 체포·구속되었다는 사실, 혐의내용, 체포구속의 과정, 목격자 또는 수사관계자의 언급내용, 향후 수사방향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누가...체포구속됐다', '...적발됐다', '목격자는...라고 말했다', '경찰은...조사 중이다', '...라고 드러났다', '...입건했다', '...기소했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며, ② 2유형의 기사는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예정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구성되고, 구 배열은 보통 사건의 발생·예정, 관계자의 언급, 관련사항(주로 사건, 사고의 경우 경찰의 조사 상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했다', '원인은...로 밝혀졌다', '관계자(목격자)는 말했다', '...알 예정이다'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③ 3유형의 기사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있었던 사실이나,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되고, 그 배열은 판결의 선고사실, 선고결과, 재판부의 언급, 판결의 대상이 된 관련사실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라고 강조했다', '...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냈다'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위 각 기사는 비교적 길이가 짧고, 기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의 선택, 배열 등에 있어 특별한 순서나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그 표현 자체가 지극히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깊이 있는 취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계기관의 발표, 자료 등에 의존하여 간단하게 구성되어 그 작성자가 다양한 표현방법 중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등 위 각 기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라면 누구나 위 각 기사와 같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사로서 그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하므로,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등을 전하는 짧은 기사,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 보도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이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자를 말한다〉 프로그램 보험회사 판매 사건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과 피고 엠비씨프로덕션이 지난 1992년 자신의 사연을 담은 〈여자를 말한다〉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이후에,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이 모 생명보험에 이 사건의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국내 30여 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측의 인터넷사이트인 imbc 등에 게시하고 출판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는 책자를 기획하고 원고의 불행한 가정사를 소재로 무단제작·판매, 유포시키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프로덕션으로부터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

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하고, 여기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해야 하는데,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되기 위하여는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 자체에 기여를 하여야 하고,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거나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한 데 불과한 자 등은 저작자로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하여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소재를 제공하여 피고 프로덕션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취재의 대상이 곧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결론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프로덕션이고, 원고는 다큐

멘터리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 원고와 피고 프로덕션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 자체에 기여를 하여야 하고,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거나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한 데 불과한 자 등은 저작자로 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하여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소재를 제공하여 피고 방송국 프로덕션의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어디까지나 방송국 프로덕션이고, 원고는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

1. 손해배상청구

가. 재산상 손해

언론사건에서도 재산상 손해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같이 언론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의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러다 보니 인과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의료, 환경, 제조물 책임에서와 같이 손해와 인과 관계 입증의 완화이론을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게시되는
표현물에 의해 명예훼손이 된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망인 A의 어머니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운영의 싸이월드 내에 있는 A의 미니홈피에 원고 갑이 망인 A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망인 A이 첫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정자덩어리일 뿐이다” 등의 극언을 하였으며,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의 합의 간청을 매정하게 거절하여 망인이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망인의 미니홈피에 접속자수가 폭주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전파 하였다. 또한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취지의 카페가 개설되고, 서명 운동이 개진

되기도 하였다.

네이버,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을 통하여 위와 같이 네티즌들이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현상을 전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에는 망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망인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포함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으며, 위 기사들에 달린 수많은 댓글 등을 통해서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편집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자신들 운영의 포털사이트 내에 개설된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 영역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물이 게시된 것을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포털사이트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의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네이버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다음 운영자와 야후코리아 운영자에게는 각 400만원, 싸이월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서 재판부는 “원고는 네티즌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사를 해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나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원고는 네티즌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사를 해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들의 행위와 이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고가 수입하는 유향유에 관한 부정적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된 사건

환경신문은 “말로는 환경, 속으론 장사속”, “환경사업이 무슨 봉인가” 등의 제목으로 원고가 수입한 유향유가 산화안정성 및 열안정성이 뒤떨어진다는 등의 원고를 비난하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오일의 수입 및 판매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유향유의 수입대금과 보관비용, 사업 중단으로 인해 지급된 보증금, 사업을 계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 등 15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액인 1억 5천만원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정신상의 손해로서 1,000만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나,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보도와 원고의 사업 중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원고의 사업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 (중략) ... 이 보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000개발공사에는 석유제품 유향유가 쓰이고 원고 등이 수입한 이 사건 오일과 같은 식물성 유향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 000개발공사 시에 반드시 식물성 유향유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관계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식물성 유향유의 우수성이 검증된 바도 없는 상황에서 000개발업자들이 굳이 기존에 사용해 오던 일반 유향유

보다 가격이 비싼 식물성 유향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없었다면 원고의 사업이 계속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와 원고의 사업 중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4601 판결

원고는 원고가 수입하는 유향유에 관한 부정적 보도로 인하여 오일의 수입 및 판매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유향유의 수입대금과 보관비용, 사업 중단으로 인해 지급된 보증금, 사업을 계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 등 15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그 중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없었다면 원고의 사업이 계속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보도와 원고의 사업 중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 배상

주식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 폭락으로 인한 회사의 자산가치나 그 회사 이사의 주가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이론적으로는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인과관계 등의 입증 곤란으로 판례상으로 인정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가 폭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묻은 한 사례에서, 원고 A회사와 회사의 이사 원고 B는 허위 내용의 보도가 방송되어 원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자산가치 50억원이 하락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의 주가가치가 57억 3,520만원이나 하락하는 등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된 후 소가 취하되어

판결의 효력은 생기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4784 판결
(2007. 11. 14. 소 취하)

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동기, 당사자의 동의 여부, 유포의 정도(발행 부수, 독자층의 구성, 기사의 크기 및 보도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횡수, 보도의 진실성, 비방의 정도,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이 있다.

국무총리 양주파티 보도 사건

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즈는 “이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총리는 그날 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으면서 양주가 아닌 복분자 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원고가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82 판결

로비의혹에 대한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액 범위

원고가 헤럴드경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를 통해 위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그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작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그 보도 횡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위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당시 위 로비의혹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던 점, 피고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보도의 의도가 그다지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93415 판결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민법 제764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정보도의 공표, 가해자의 비용으로 민사 판결문이나 명예훼손죄의 형사 유죄판결문을 신문에 게재토록 하는 것, 또는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인정하는 근거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바,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경우 (1)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언론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써 정정광고를 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점,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000환경신문의 발행부수가 약 6,000부 정도에 불과한 점, 현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후 약 5년 여의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4601 판결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경우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소의 회사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를 편취하는 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원고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

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원 보도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소외 회사인 점, 이 사건 보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연개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경우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정보도는 금전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때로부터 이미 1년 10여 개월이 경과하여 정정보도를 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를 제공받은 다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고 B기자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기사의 작성·게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각 포털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게재하기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인정한 금전배상의무 외에 따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4가합12160 판결

3.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이 권리는 언론중재법상 새롭게 인정된 정정보도청구권으로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 인정되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청구권의 성격이나 성립요건이 다르다 할 것이다.

가. 정정보도청구권자

(1)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는 자연인, 법인,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이 포함됨은 물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

최근 판례 중에는 정책기획위원회(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나10025 판결), 대통령비서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55 판결), 서울지방국세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가합102784 판결), 외교통상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의 정정보도청구 사건

등이 있다.

(2) 개별적 연관성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처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그 장관 소속 행정부처가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동아일보의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한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

피고 동아일보는 당해 기사가 건설교통부 소속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건설교통부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부처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인 행위로서 이를 단지 장관 개인의 문제로 보아 해당 행정부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어떤 행정부처의 고위직에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행정부처의 정책수행 신뢰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부처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기사로 인해 원고(건설교통부)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건설교통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이 속한 단체가 그 개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문화일보가 “노 정권의 386 핵심들”이 “386 간첩 단사건”의 피의자들과 수시로 교류해왔으며, 국정원 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실었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노정권의 386 핵심들” 등의 표현에 의하여 지칭되는 특정인들이 원고(대통령 비서실)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대통령비서실)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대통령 비서실)는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 핵심들’, ‘여권 386 세대들’, ‘여권 내 386 인사’, ‘정지권 386 인사’, ‘386 출신 권력 핵심’이라는 표현들을 들어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 어떤 보도에서 지칭된 개인과 그가 속한 단체 또는 기관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에 대한 보도가 그 개인이 속한 단체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바,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 핵심들’ 등의 표현에 의하여 지칭되는 특정인들이 원고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62 판결

나. 정정보도문 게재의무자

서울고등법원은,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기사가 게재된 출판물의 발행인만이 부담하는 것인 바, 다른 출판물인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신문들에 피고들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을 광고형식으로 게재하라

는 것에 해당하므로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 B, C는 한국음식문화신문 소속 편집국장, 정책기획실장으로서 그 신문 발행의 권한이 없고, 피고 D는 제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국음식문화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6. 1. 24. 선고 2005나20936 판결

방송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는 정정보도의 게재의무자가 아니다

“정정보도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출판물 등의 발행인, 방송사업자, 인터넷 신문 운영자 등이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 A는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에 지나지 아니하여 방송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A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4가합12371 판결

다. 대상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 사실적 주장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고 한다.

우리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례에서,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 보도 사건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사권행사에 관한 동아일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제된 기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이OO 장관이 취임 후 차관, 감사관,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비서관을 호남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다”는 부분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의 성격을 살펴보면, 앞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뒷부분은 위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원고 소속 장관이 지나치게 연고 위주의 편중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의견을 표명한 이상 위 의견이 위 사실 이외에 또 다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서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원고 소속 장관이 지나치게 연고 위주의 편중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당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라. 정정보도문의 게재 거부사유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상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원보도가 피해자의 법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됨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언론이 스스로 사후 보도에 의하여 중정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로서 목적하는 상태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그 권리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이 없다.

언론이 원보도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보도를 해주었으나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다

동아일보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보도를 하자, 건설교통부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 동아일보는 원 기사가 보도된 이후 원고(건설교통부)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건설교통부의 해명 기사는 건설교통부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07. 3. 2.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의 반론 보도는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반응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07. 3. 2.자 기사를 보더라도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4. 반론보도청구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취지-동등한 방어주장의 기회와 진실발견

언론사가 보도로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형평의 원칙상 동등한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고, 독자들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공급하는 정보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질 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때에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

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다. 반론보도청구권자

(1)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는 언론보도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다.

언론중재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동법 제14조 제3항 준용).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는 자연인, 법인,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이 포함됨은 물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동법 제14조 제4항).

최근 판례 중에는 문화관광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가합75462 판결), 국정홍보

처(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28135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전주우성타운변영회(전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6가합516 판결), 특허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카기9504 결정)의 반론보도청구 사건 등이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구 정간법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아일보 측은 구 정간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그 향수 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나 제도의 향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정하게 대응한 방어수단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인격권 보장의 요청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국가 등은 행정권의 주체로서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동일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 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론의 범위에 합리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국가 등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배제하여야 할 만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법원이 주재하게 되는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동아일보 측의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의 과제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기되는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구 정간법 제16조 제7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은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민사소송법 등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아일보 측은 구 정간법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 등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도 앞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공익과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배후에 있는 권리 주체로 하여금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편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관이나 단체 특히 국가기관이나 공법상의 단체 등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

능력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이나 단체의 지위는 다른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동일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 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론의 범위에 합리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국가 등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배제하여야 할 만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법관이 주재하게 되는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가하여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동아일보 측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2) 개별적 연관성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라. 반론보도청구의 대상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사실적 주장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의 범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의 범위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출연하여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토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토론자의 발언 내용이 방송사의 기획의도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이를 편집하여 방송할 수 없으므로 생방송 토론 프로

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일방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다른 토론자들이 반박할 수 있으므로 반대 사실의 주장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 및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반론제도 체도의 취지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우 일방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도 반론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토론과정이 반론보도를 통하여 계속되는 듯한 결과가 될 뿐인데 반해, 방송사로서는 매회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자신이 편집·통제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자체가 퇴보할 가능성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사가 토론자들을 특정한 의견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하거나 토론 방식이나 진행 등을 편파적으로 하는 등으로 토론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불여지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는 당해 토론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카합2433 판결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토론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언론사에게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박 보도 사건

MBC-TV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박 선원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원고 외교통상부는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 원고 외교통상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반론보도로 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문화방송 측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보도는 원고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 현지 및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광범위한 정보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동원호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도는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 외에는 선원들이 납치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통상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보도는 외교통상부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이 사건 보도 중,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 현지 및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이고,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 외에는 선원들이 납치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실요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부분은 외교통상부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적 주장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구별하는 척도

대법원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인지를 구별하는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시하였는바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추상적 판단기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면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구체적·종합적 판단기준

판단기준이 항상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의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을 비교하는 방법

원보도와 이에 대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

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④ 제3자의 의견을 인용 보도한 경우의 문제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그것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문제 대상이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를 사실적 주장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추상적 판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존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가 문제된 사례

동아일보는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 제목의 보도 등 3차례에 걸쳐 국정홍보처장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자 국정홍보처는 이 기사들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보도에 진위의 입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동아일보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인정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파기 후 환송판결을 내렸다.

과기 환송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원 보도에서 제3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1보도는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 제목으로 국정홍보처가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실 및 성명 내용의 요지를 보도한 다음, 이러한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국정홍보처 측의 주장을 게재하고, “사흘에 한 번 꼴로 언론보도 공격”, “정부 일각서도 문제점 지적”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본문기사 내용으로 “정부 일각” 및 “한 관계자”의 반응 내지 지적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6월 28일자 성명에서 해명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정부성명이 이처럼 남발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2보도는 “‘뭇국정홍보처장의 ‘퀘변’”이라는 제목의 사실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서 “이 같은 언론 본

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놓고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퀘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보도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2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의하더라도, 네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 내용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그 성명 내용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제3자의 논평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제3자가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2 보도는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 28135 판결

(따기원송 우 사건)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 보도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여 언론사의 의견 표명을 한 것이거나 그 자체로서 언론사의 비평 내지 논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하는지, 반론보도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해야하는지의 문제

우리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를 하기 위하여 원보도의 내용이 반드시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요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에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에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에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에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론보도는 그 대상이 되는 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OO제일교회가 OO원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에 제기한 정정·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OO원보가 반론보도 요구를 수용하여 반론을 게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합의가 성립하여 조정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OO원보는 이 조정화해조서가 무효라며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OO원보는 이 사건 화해조서는 A의 설교내용이 OO제일교회와 B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OO제일교회 측의 반론보도 요구를 수용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명예훼손 사건이 항소심 재판에서 A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재평가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장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사유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조정화해에 의한 반론보도는 그 대상이 되는 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101856 판결

(4) 반론권자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범위

수원지방법원은,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권자도 오로지 사실적 반박만 할 수 있고, 그에 덧붙여 반론권자의 의견이나 논평을 가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사실상의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이 아니라 원고의 주관적인 주장 및 비판인 경우, 그 반론보도문은 사실적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반론보도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가합17426 판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권자도 오로지 사실적 반박만 할 수 있고,
그에 덧붙여 반론권자의 의견이나 논평을 가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마. 반론보도문 게재 거부사유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
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언론중재법 제 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준용).

(1)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
로 충분한 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
성된 경우,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
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
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100290 판결

(가) 반론보도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충
분히 원문기사에 실려 이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원보도에 피해자의 인터뷰기사가 실렸으나
피해자가 신청으로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은
여전히 반론보도청구의 이익을 갖는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반론보도청구인이 구하는 반
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
신문을 통하여 원문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
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에는 청구인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
익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보도에 피해자의 인터뷰기사가 실
렸으나 피해자가 신청으로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인은 여전
히 반론보도청구의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하였
다.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기사
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기사와 같은 비중으
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을 말하므로, 원심이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피신
정인이 보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도내용이나 보도태
도 등에 비추어 위 인터뷰기사에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으로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
법이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5. 1. 선고 2002나40113 판결

원래 방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일부 보도하였으나, 그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하게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반론보도청구의 이익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방송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
용을 일부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하게 보도되었다
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방송 다음날
원고의 반론보도 내용을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하
였다는 주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신청인이 반론으로 주장하는 A가 신청인에게 개종강요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원보도에서 포함된 “법원에서 A의 개종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부분에 의하여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

신청인은 A가 신청인에게 개종을 강요하였고 이것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A가 ‘상당시 성경공부를 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앞부분에서 A가 신청인에 대한 개종강요 및 감금·감금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중 감금·감금교사 혐의는 무죄로 개종강요 혐의는 유죄로 선고되었다는 취지를 적시한 후,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는 A의 의견으로서 ‘상당시 성경공부를 했을 뿐이다’를 전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즉 A가 신청인에게 개종강요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기사 중에 포함된 ‘법원에서 A의 개종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부분에 의하여 이미 충분히 보도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다시 반론보도청구로 동일한 사실을 주장을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100290 판결

(나) 반론보도의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이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반론보도청구를 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당시 신청인을 면회하거나 신청인이 출소 후 만난 검찰간부가 없었다거나, 한화갑, 권노갑, 김옥두 의원 등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거나, 신청인은 광주상고 출신이 아니라거나, 타인 명의로 KAL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부분은 원보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엽적인 것으로서 역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12566 판결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 중 원보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엽적인 부분은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고발을 고소로 잘못 표현한 점은 단순한 오기로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신청인은 기독교 단체 안중회 신도로서, 이 사건 기사 중 ‘안중회측은…A에게 혐의를 씌워’라는 부분에 관하여, A를 고발한 사람은 신청인 등 개인 자격의 72인이지만 안중회가 아니며, 혐의를 씌우는 것도 수사기관이지 고발인이 아니므로, 위 기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록 안중회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A를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72인의 고발인 중 대부분이 안중회 신도이고 대표 고발인이 안중회 소속 목사인 점, 위 고발은 안중회 신도인 신청인 등에 대한 개종강요 혐의에 대한 고발인 점, 고소(고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한 혐의로 고소(고발)한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고발 주체를 ‘안중회측’이라고 한 표현이나, ‘혐의를 씌워’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또한, 이 사건 기사에서 ‘고발’을 ‘고소’로 잘못 표현한 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신청인의 단순한 오기로 역시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100290 판결

(다)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인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언이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없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

게 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12566 판결

신청인이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는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신청인이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서 이용호가 고소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40억 원,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0억 4,000만원을 받았고,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홍준표가 신청인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신청인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신청인 이용호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속여 사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삼에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이용호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삼에인더스와 관련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청인의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형사 최종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또한 신청인이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민사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청

인이 반론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론보도청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이용호로부터 월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속여 사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삼에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그 반론보도내용에서 부인한 신청인의 위 각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졌고,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인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이용호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 삼에인더스와 관련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그 반론보도내용에서 부인한 위 각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민사확정판결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들 반론보도내용들은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반론보도내용은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몰랐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반론보도 내용에서 신청인이 부인하고 있는 각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졌거나, 반론보도내용에서 부인한 사실들이 민사판결에서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보도 내용들은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들 반론보도내용은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몰랐을 수가 없다.

위 대법원 2004다50747 파기환송 판결 후에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보도내용, 즉 신청인이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서 이용호가 고소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월동비 등 명목으로 40억원,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0억 4,000만원을 받았고,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웅준표가 신청인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는 모두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이나 기타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다거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없었다는 취지 및 신청인이 이용호나 삼에인더스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는 또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12566 판결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반론보도청구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2)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반론보도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론보도내용의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반론보도의 계

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준용).

이것은 반론보도내용의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바.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재판

반론보도인용 재판의 취소와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항소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8조).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재판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심재판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당심은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인 동아일보가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심은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 18,89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28135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5. 금지청구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제작해 피고 문화방송에 공급, 방영하는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영분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들의 모습이 삭제되지 아니하고는 직접 혹은 제3자에 의해 재방송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제작·반포·판매·공여, 드라마의 반포·판매·공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침해예방 및 간접강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제3장 초상권 침해 부분에서 살펴본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침해예방청구와 간접강제신청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상 문제가 된 연주장면은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다시 복구하여 재방영을 하거나 비디오 등을 제작할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혹은 제3자에 의해 이 사건 방송의 재방영, 인터넷을 통한 '드라마 다시보기' 다운로드에의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등의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원고들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

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에 있어 이 사건 연주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장면은 이미 삭제되었고, 이 사건 드라마의 수출을 위하여 제작된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에서도 이 사건 연주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삭제된 이 사건 연주장면을 기술적으로 쉽게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침해예방청구와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드라마 <년 어느 별에서 왔니>의 내용전개에 있어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연주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위 연주장면은 삭제되었고,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에도 위 연주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상영 등의 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함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 영화로 인한 원고 및 고인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가 그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만큼 중대, 명백해야 한다

원고 박지만은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픽처스가 제작, 배급한 영화 <그 때 그 사람들> 중 특정 장면이 허위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고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유족인 원고 자신의 인격적 법익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의 상영 및 배포 등의 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영화 상영금지 신청에 대해 원고 및 고인의 인격적 법익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영화 상영 등의 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함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 영화로 인한 원고 및 고인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가 그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만큼 중대,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고인의 역사적 특수성, 이 사건 영화가 다른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 영화라는 표현물이 갖는 특수성, 이 사건 영화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화로 인한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의 침해를 이유로 영화상영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 역시, 이 사건 영화로 인해 원고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의 침해된 정도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영화 상영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영화로 인해 원고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의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제2부-제2장-4-마-(2) '영화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이 사건 영화로 인한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 또한, 이 사건 영화로 인해 원고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의 침해된 정도가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아니하였다.

6. 형사 고소

가. 명예훼손 관련 범죄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 일반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에 따라 양자의 적용이 달라진다.

학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사건

B대학교 전 재단이사장이던 C와 대학교 이사진, 총장, 교수협의회 사이에 대학운영권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위 대학교 교수로서 C의 재직 당시의 잘못된 행적에 대하여 알린다는 명분 아래 별다른 확인 없이 C를 비방할 목적으로, B대학교 학보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회장을 봉고차로 납치해 온갖 구타를 자행한 뒤 화장터에 갖다버리고, 학교 뒷산에 있는 야산으로 납치해 목까지 파묻어 계속 저항할 것이냐고 협박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뒤 학보 4,000여 부가 발행되게 하여 학내외에 배포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인 A가 대학교 학보에 의해 전 재단이사장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벌금 50만원)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6. 선고 2005고정4 판결

피해자가 선교회에서 받은 목사 안수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피고인 기자는, 교회 목사인 피해자 A에 관한 보도에서, “다시 A를 고발한다”라는 머리기사와 소제목 “목사안수 정식으로 받았나”라는 하단에 “A 목사가 선교회에서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받은 목사 안수는 전통교단의 목사 안수와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여 임시 면허증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한 다음, 그 무렵 000신문 약 6,000부를 성명불상의 00교회 신도들에게 배포하였고, 위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사이버신문에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A가 선교사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아 정식 목사가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사실로 기재된 기사 내용 중 “A 목사가 선교회에서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다시 A를 고발한다”는 머리기사 및 소제목인 “목사 안수 정식으로 받았나” 부분과 그 내용 중 “하지만 그가 받은 목사 안수는 전통교단의 목사 안수와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여 임시 면허증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위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의견표명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 및 의견표명은 피해자가 선교회에서 받은 목사 안수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피해자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여왔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목사 안수에 관한 위 기사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6. 3. 20. 선고 2005노4596 판결

문제된 보도는 피해자가 선교회에서 받은 목사 안수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피해자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방의 목적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우리 법원은, 형법 제309조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노590 판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

우리 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본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 믿고 보도를 하였으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공소사실과 같은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것은 고OO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또는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덧붙여 피고에게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보도에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일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신부가 성당 내 유치원에 다니는 피해아동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에서 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사례

이 사건 방송은 신부인 피해자가 성당 내 유치원에 다니는 피해아동들을 사제관 욕설 및 아파트 등에 테러와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보도였다.

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의 판단에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인 점, 방송 구성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해아동들을 성추행한 후 고의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하고 있고, 원장수녀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처리한 점, 방송보도는 다른 언론매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그 내용이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이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방송내용에 관한 항의를 받고 이를 방송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영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방송내용의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발견 및 수사를 촉구하는 의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노590 판결

(2) 명예훼손죄

(가) 일반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부처별 고려 대상자 명단’이라는 인사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였다는 보도가 대통령민정수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피고인은 월간OO에 “대통령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란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 문OO이 민정수석비서관 내정 당시에 ‘부·처별 고려 대상자 명단’이라는 인사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장관급 인사에 부적절하게 깊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의하면 문OO 민정수석비서관이 리스트(부·처별 고려대상자 명단)를 작성하였는데 그 대상자 중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추천한 인물과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인수위에서 공식 추천된 인물보다는 리스트에 나온 고려대상자가 더 많이 입각했다고 적시되어 있어, 문OO 민정수석비서관이 장관급 등 고위직 인사에 인수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국민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장관 인사를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사대상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검증작업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당연한 직무이므로, 대통령비서실 소속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상 가능한 인사들을 미리 검증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그 리스트의 대상자가 인수위에서 공식 추천된 인물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리스트에서 더 많은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민정수석비서관이 인사에 부적절하게 깊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실은 민정수석비서관 피해자 문00이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거나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어 위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피해자 문00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인사대상자에 대한 검증작업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당연한 직무이므로, 대통령비서실 소속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상 가능한 인사들을 미리 검증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 리스트에서 많은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민정수석비서관이 인사에 부적절하게 깊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이 적시된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술서를 배포한 상대방이 모두 기자이기는 하나, 자술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실제로 기사화되어 외부로 전파된 이상 공연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술서 사본 15매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 자술서에는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연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자단 10여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자술서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주지 않으니, 기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를 하는 등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술서 원본을 한 기자에게 교부하였고, 다른 기자들이 복사한

자술서를 배포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일부 기자는 자술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을 취재하고, 실제로 이를 보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술서를 배포한 상대방이 모두 기자이기는 하나, 자술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실제로 기사화되어 외부로 전파된 이상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7. 3. 8. 선고 2006노1816 판결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하여서 처벌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고, 여기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4고단31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고단3244 판결

(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0조).

우리 법원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

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799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든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554 판결

취재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피해자 A가 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 유출 대가로 뇌물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기사 부분과 김OO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해자 A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될 정도로 혐의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가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피고인은 OO일보의 취재기자로서, 취재원을 통하여 피해자 A의 3,000만원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재원에 관하여 OO대 전 교수, 경찰청 경무관급 간부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재원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수도 3,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취지의 00대 전 교수의 추측성 진술만 믿고 이 사건 기사에서 그 수취액을 3,000만 원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이 김00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는 경찰관계자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김00를 소환하여 조사를 완료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점, 경찰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웠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와 같은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799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9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4고단3130 판결

교육·시민단체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에 대하여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없어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 급식제도 개선추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에는 제11항에 ‘공산품 관련 모 업체는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서는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언론기관 소속 보도기자인 피고인이 위 교육·시민단체의 담당자 또는 위 ‘공산품 관련 모 업체’로 지목된 00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자회견문 및 그 질의 응답 과정에서 알려진 추가적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마치 독자적인 취재에 의하여 00유통이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육·시민단체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의 내용

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3) 모욕죄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1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우리 법원의 입장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칼럼에 게재된 내용 중 “똥구멍 기사 삭제 사건”, “편집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00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금00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표현은 언론사 편집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칼럼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사 삭제 행위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고, 0000의 기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한 후 피해자가 OO 고위층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언론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칼럼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언론매체 및 OOOO 기자들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언론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인 피해자가 편집국장 몰래 특정 기사를 삭제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 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표현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인 점, 이 사건 칼럼에 게재된 “편집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OO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금OO 사장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 이 사건 각 칼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칼럼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85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일반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사례

국회의원 갑이 국정감사업무를 마친 뒤 법사위원

회 소속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검사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술집 주인 및 종업원들에게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를 하였다.

위 기사를 보도한 기자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가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A는 술집 주인 000과의 인터뷰 내용, 전화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갑 의원이 위 술자리에서 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면, 위 갑 의원이 국정감사업무를 마친 뒤 법사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대구지검 검사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집 주인 및 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술집 주인 000이 모욕감을 느낀 사실은 인터뷰에 의해 확인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기사가 완전히 허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에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을 덧붙인 정도의 것인 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마친 그날 피감기관의 공무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나 술자리에서의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그 행위자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도록 할 필요성이 일반인들에 비하여 훨씬 높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을 보면 국감기간에 피감기관 검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 위 갑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일반 명예훼손죄로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이 사건 보도가 완전히 허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에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을 덧붙인 정도이고, 술자리에서의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그 행위자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도록 할 필요성이 훨씬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성적 욕설에 대하여 보도를 한 기사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게재한 사실들은 OO근로자들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관심과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이라는 이익에 관한 것이 그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었고, 설사 그 표현에 있어 이OO를 두고 ‘사람 같지도 않은...’ 등의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기 및 목적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고정296 판결

(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50조 제2항).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는 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체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4. 10.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또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함이 필요할 것인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

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될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가진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의원선거의 공천에 탈락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

피고인은 A의 편집국장으로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0시 ‘가’ 선거구 기초의원선거의 00 후보자 공천을 두고 경합을 벌이던 권00의 공천탈락 여부에 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권00 후보는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1만부를 발행하여 그 중 약 3,000부를 00시 일대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고,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노26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고합141 판결

나. 음성권 침해 관련 범죄-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면서(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또는 이렇게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

문화방송 소속 이상호 기자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해 작성한 녹취보고서 3건 및 녹음테이프 등을 지난 2004. 12. 5. 재미교포 박00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보도 하였으며 월간조선 편집장 김00은 월간조선 “유령처럼 떠돈 안기부 X파일 전문 공개”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호에 대해서는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보도의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00에 대해서는 월간조선의 보도는 문화방송의 보도와는 달리 녹취록 및 녹취보고서의 전문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계가 없는 내용 또한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전문 게재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라도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지 비례성을 갖지 못하므로 위법성의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2심 재판에서, 피고인 이상호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별 형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에 관해서 민사적인 언론중재법률상의 위법성조각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이 사건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위법성조각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위법성조각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재판절차에서마저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지득 또는 채록된 자료의 내용을 그 증거가치를 불

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규정 전반을 검토해 보았을 때 도청 내용 공개가 언론의 공적 사명에 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정보원에 따른 언론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원심이 제시한 요건을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기본권 상충의 영역 중 일반적 정보원에 의한 보도가 아닌 불법 도청에 의한 자료를 공개하는 보도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은 더욱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 도청의 내용을 열어 보니 결과적으로 꼭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었다고 해서 공개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한다면 어느 순간 어느 권력이나 재력 있는 세력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독과실을 얻고자 타인의 밀실을 엿듣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이 상호의 행위는 나아가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 출판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보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문화방송의 보도 여부나 보도내용에 관한 결정이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이 상호 개인이 아닌 방송국 내지 보도국의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의 선제 보도가 보도 결정을 직접 촉발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한 보도 역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도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피고인 이 상호와 피고인 김OO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다. 기타 범죄

(1) 공갈죄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0조).

언론사건에서 공갈죄는 언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할 것을 통고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신문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출마를 앞둔 피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기사를 게재할 것을 통고하여 신문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갈취한 사례

피고인은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기사를 게재한 신문 3,000부를 배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문을 받았으면 신문 대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신문대금을 주기 싫으면 신문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특별감사결과를 가지고 1탄, 2탄, 3탄 시리즈로 보도할 생각이다”라면서 신문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출마를 앞둔 피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등 그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요구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1고단13432, 2002고단5755(병합) 판결

제약회사의 대외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비판적 칼럼을 게재한 신문을 배포할 것임을 통고하여 제약회사의 홍보이사가 외포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광고료 증액 명목으로 300만원을 갈취한 사례

OO신문의 발행인인 피고인이 발행인 칼럼란에 OO약품(이하 'B 회사'라 한다)의 대외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비판적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칼럼의 내용을 미리 B 회사의 홍보이사인 피해

자에게 알려주고, 위 신문에 위 칼럼이 그대로 게재되어 배포될 경우 B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신인도가 하락할 것과 홍보책임자인 피해자의 신상에도 불이익이 닥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위 신문의 배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받고는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B 회사의 OO신문에 대한 광고료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피해자 홍보이사에게 위 신문의 배포를 중지해주는 대가로 3개월분 광고료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다른 시기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증액된 광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만원의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7노106 판결

공갈의 상대방과 공갈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다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7노106 판결은 신문사의 발행인이 OO약품의 홍보이사에게 OO약품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게재한 신문을 배포하겠다는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 홍보이사에게 외포심을 일으켜 광고료 증액 명목으로 3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공갈의 상대방은 OO약품의 홍보이사이고 재산상의 피해자는 OO약품이나 공갈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그가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한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970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참조

(2)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4조).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책자를 길거리에서 배포하여 신문의 구독중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책자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일원에 위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위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조선일보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784 판결

7.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직접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결과 반론보도로 합의된 사건을 후에 다시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로 간주되는 때, 직권조정결정이 이의신청이 없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언론중재법 제23조). 여기서 재판상 화해는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조서에 적은 때에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 쌍방은 피고 회사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이 종결되었다. 그 후 원고는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는 위 조정신청사건을 피고 회사와의 화해로 종결시킨 이후 이와 별도로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다시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할 것을 전제로 위 조정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가 요청하는 반론보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포기하는 취지로 피고 회사와 조정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한 정정보도청구와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조정합의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4가합12371 판결

방송사가 조정결과에 의한 합의문 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BS는 임성훈이 진행하는 <세븐데이즈> 프로그램에서 원고 A가 친일파이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은장도로 자결하라고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그러자 원고

A는 위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 소송 중 원고 A와 피고 방송사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는 <세븐데이즈>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평상속도로 원고가 요구하는 보도문을 낭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방송사는 위 프로에서 시사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방영한 후,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진행자인 임성훈을 사라지게 했고, 잠시 후 위 조정에 따라 1분여 동안 원고 A의 강연사진이 비춰진 채 “2005년 3월 13일 <세븐데이즈> 방송 관련 A 측 반론보도”라는 자막을 아래로 하여 무명의 사람이 이 사건 보도내용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방송사가 위 조정의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제1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정과정에서 피고 방송사가 ‘<세븐데이즈> 프로의 진행자가 이 사건 반론보도 내용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방송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인 임성훈이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뒤 무명의 내레이터가 반론보도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위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조정원안대로 방송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단72458 판결

이에 피고 방송사는 내레이터도 <세븐데이즈>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고, 반론보도의 내용을 누가 낭독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 2,000만원의 위자료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항소법원은, 위 조정 내용에서 반론보도 내용을 읽도록 한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주재

하는 사람인 임성훈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원고 A는 최초로 피고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가, 손해배상은 포기하고 반론보도 내용을 방송하는 것으로 하는 임의조정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 A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진행자인 임성훈이 직접 보도내용을 낭독하는 것이 원고 A의 명예회복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임의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임의조정에서 임성훈이 위 보도내용을 직접 낭독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에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4583 판결

조정 내용에서 반론보도의 내용을 읽도록 한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주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므로 무명의 내레이터가 반론보도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조정의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가 임의조정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 진행자인 임성훈이 직접 반론보도 내용을 낭독하는 것이 원고의 명예회복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임의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행자인 임성훈이 위 보도내용을 직접 낭독하는 것은 원고의 조정 내용에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문화관광부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하자, 위 결정에 대해 동아일보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반론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소제기가 간주되는 규정(언론중

재법 제22조 제4항)에 대하여 일반적 행위선택의 자유,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적 행위선택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제소가 의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에게는 처음부터 조정절차나 법원의 소송절차를 가릴 것 없이 피해구제를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또한 당사자가 진정으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회피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법률에서 이러한 회피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번거로운 별도의 제소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에게 원하지 않는 소송절차를 강제함으로써 일반적 행위선택의 자유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동아일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적인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신장하고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그 신속성의 요청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사회분야의 유사한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직권조정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제소를 의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과 같은 언론사의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동아일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7카기1136 결정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소 제기가 간주되는 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제소가 의제될 경우도 있겠으나,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에게는 조정절차나 소송절차나 가릴 것 없이 피해구제를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당사자가 진정으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일반적 행위선택의 자유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문헌

- MEDIA LAW REPORTER(34),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 2006
 MEDIA LAW REPORTER(33),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 2005
 언론재판실무편람, 법원 행정처, 200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 법원 행정처, 200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 법원 행정처, 2003
 언론법 연구, 사법연수원, 2003
 저작권법 I, 사법연수원, 2003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4집, 언론중재위원회, 2007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3집, 언론중재위원회, 2006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2집, 언론중재위원회, 2005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05